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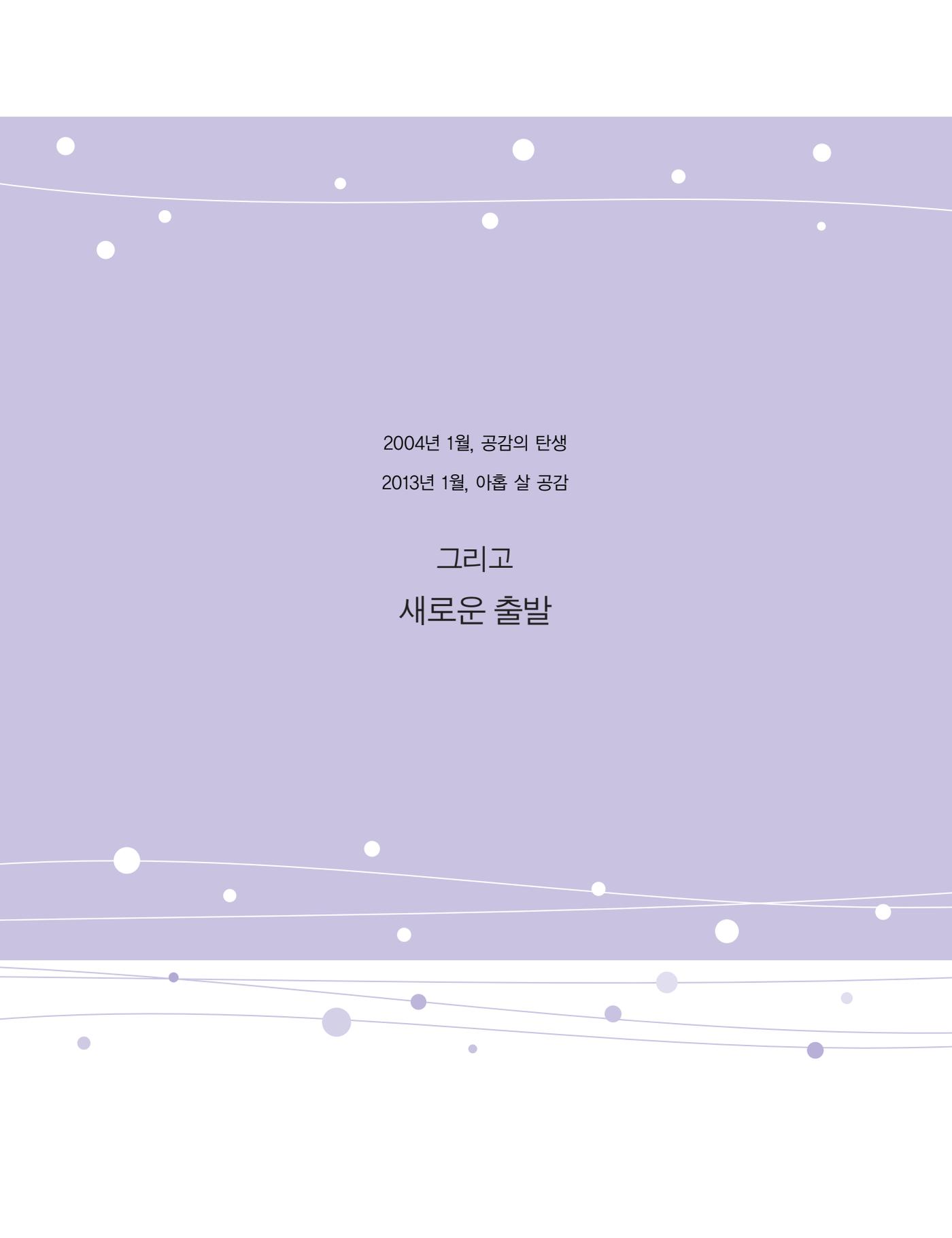


共感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창립 기념 자료집





2004년 1월, 공감의 탄생

2013년 1월, 아홉 살 공감

그리고
새로운 출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CONTENTS



- 04 인사글
법에도 꽃이 필 수 있습니다
- 06 여는 글
- 08 신경숙이 본 공감
다시 한 살이 된 공감
- 14 함께하는 사람들
공감 이사회
공감 구성원
공감 기부회원 - 공감의 별나고 특별한 기부 이야기
공감 자원활동가
- 25 기획기사 PART 1 - 공감이 달라졌어요
공감,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 30 기획기사 PART 2
공감 9년 평가 기획좌담회
- 40 공감 9년의 발자취
- 45 공감의 활동
 - 46 여성인권
 - 50 장애인권
 - 54 이주·난민
 - 57 빈곤·복지
 - 61 국제인권
 - 65 성소수자
 - 69 취약노동
 - 72 공익법 일반
 - 75 공익법 교육·중개
- 78 기획기사 PART 3
공익변호사를 찾아서
- 84 기획기사 PART 4 - 공감이 만나고 싶은 사람
<두 개의 문> 김일란 감독과의 만남
- 90 공감 살림·모금 통계
- 93 후원 안내
- 94 원서동에 눌러 오세요!
- 95 2012년 기부회원 명단



법에도

꽃이 필 수 있습니다

2004년 아름다운재단 울타리 안에서 시작한 공감은 2012년 12월 1일 공익인권법재단으로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법”을 가지고 “인권”에 화두를 던져온 공감의 발걸음은 한국사회 인권 변론사에 새로운 족적을 남겼습니다. 공감은 국내 최초의 공익변호사단체로 출발했습니다. 첫 발걸음은 불안하고 불완전했습니다. 많은 우려의 시선도 존재했습니다. 새로움을 가장 먼저 감지한 것은 바로 청년들이었습니다. 조영래를 꿈꾸던 청년 법학도들은 가슴으로 공감을 맞았습니다. 가슴에 지핀 불씨는 2009년 로스쿨 출범 이후 전국의 로스쿨로 들불처럼 퍼졌습니다. 거의 모든 로스쿨 내에 학생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공익·인권법 학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지속적이고 헌신적인 공감의 활동은 일반 변호사들에게도 청년 시절 품었던 ‘인권 변호사’의 꿈을 꿈틀거리게 했습니다. 이로부터 여러 로펌의 공익위원회 활동 활성화



화 움직임이 비롯되었습니다. 실험적으로 출발한 공감의 활동이 많은 분들의 지지와 응원 덕분에 정착되었습니다. 이제 공감은 내용에 걸맞는 옷을 입고자 새로운 길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공감이 새로운 공익변호사 활동의 내용을 생산했다면 이제는 새로운 조직 틀거리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그릇에는 기존의 활동을 더 내실있게 담아내는 것은 물론 공익변호사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거름이 되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을 담아낼 것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공감이 뿌린 씨앗과 거름이 바탕이 되어 분명 법에도 꽃이 필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공감이 만들어 가는 공익인권변호사의 길을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 안경환 드림

2004년 1월

아름다운재단 산하에서

첫발을 내딛은

공감이

2013년 1월로

9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공감의 지난 9주년은 사회적 약자들 삶의 일상을 돌보는 법을 추구하기 위한 작은 움직임을 모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013년 공감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새로운 출발점에 섰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자세로 공감의 이름인 '공익'과 '인권', '법' 그리고 '공감'의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공익은 ‘공동의 이익’입니다. 개인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사회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공익은 함께 사는 삶을 지향합니다. 1%만을 위한 사회가 아닌, 인간만을 위한 지구가 아닌, 모두가 인간답게 사는 삶, 자연과 공존하는 삶이 바로 공익입니다.

공익
共益

인권
人權

인권은 소리 없는 아우성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장애인과 난민, 이주여성과 성소수자, 청소노동자와 홈리스들이 소리 없는 아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우성은 가까이 다가가 그들 곁에서 듣지 않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함께 해주기를 오늘도 고대하고 있습니다.

법은 테두리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법이 해야 할 일입니다. 테두리 밖에서 보호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 법의 테두리를 넓혀야 합니다. 열린 법이어야 합니다. 열린 법이기 위해 우리의 인식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사는 사회의 테두리가 됩니다.

법
法

공감
共感

공감은 공명(共鳴), 함께 울림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지구의 한 부분이고, 자연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울려야 합니다. 나의 삶이 나만의 삶이 아니고, 타인의 삶도 그들만의 삶이 아닙니다.

나 하나 꽃 피어

조동화 시인은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입니다. ‘공익’과 ‘인권’, ‘법’ 그리고 ‘공감’은 결국 ‘함께 하기’입니다. 저희 공감은 미력하나마 이러한 ‘함께 하기’, 이를 통한 ‘희망 그리기’를 해왔습니다. 그 모두가 공감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공감은 법의 테두리 끝에서 앞으로도 소리 없는 아우성을 듣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일에 함께 할 것입니다. 홀로서기를 시작한 공감에 앞으로 함께 해주세요. ‘홀로’ 그리고 ‘함께’.

신경숙이 본 공감

다시 한 사람이 된 공감

신 경 숙 작가/공감 이사

#1

이제 지난해가 된 2012년 4월 19일에 나는 뉴욕에 있었고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으나 책을 통해, 지인을 통해 이웃처럼 느끼고 있던 차병직 변호사가 보낸 것이었다. 나 개인에 대한 부분을 생략하고 그가 읽기 좋게 나누어 쓴 문장들은 이어서 여기에 소개한다. 허락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뭐라 뭐라 하는 것보다는, 지난 9년간 함께했던 아름다운 재단으로부터 막 독립해서 이제 한 살로 다시 태어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대한 소개의 여는 글로는 그가 내게 보낸 이메일을 공개하는 것이 최상일 것 같다는게 내 판단이다. 그러니 그도 이 공개를 이해해 줄 것이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이란 이름의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9년 전 박원순 변호사가 만든 아름다운 재단의 부속 활동 기구로 출범하였지요. 초창기엔 다섯 명의 젊은 변호사가 모여 일을 시작하였고, 지금은 변호사 8명에 상근 실무자 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들은 창설 때부터 지금까지 매월 250만 원의 스스로 정한 급여만 받고 오직 공익을 위해 모든 일을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차 그들의 활동을 아시게 되겠지만, 선배인 제가 보더라도 존경스러울 정도로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중략)

금년 여름에 독립법인으로 재창설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법인의 얼굴이자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 구성을 해야 하는데, 저에게 자문을 구해 왔습니다. 공감 구성원들이나 저나 공감에 한마디라도 도움과 격려의 말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중 저는 일찌감치 마음에 두고 있던 신 선생님을

추천하였습니다. 공감 구성원들은 당연히 찬성을 하였습
니다. 제 짧은 판단으로, 신 선생님께선 그 동안 이런 일
에 잘 나서지 않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이해하
고 바라보는 눈이 선하고 참신하여 필요한 도움을 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히 이사직을
맡아 주십사 하고 편지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가 다음날 날이 새면 전화를 하겠다고 썼기 때문에 당
시 뉴욕에 있던 나는 얼른 아래와 같은 답장을 썼다.



공감의 이사를 시켜 주신다니 영광입니다.

나를 과대평가해서 제가 무슨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 것 같은데... 곧 후회하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제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 기꺼이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을 일일이 설명해 주지 않아도 좋은 분들일 것이 틀림없고 좋은 분들과 섞여 있으면
제가 배울 게 많을테지요.

제가 이메일을 쓰는 이곳은 서울이 아니라 뉴욕입니다. 일을 마치고 말일 즈음 서울로 돌아갈 겁니다.
제가 요청할 일은 따로 없고, 제게 요청할 일이 있으면 하세요.

그럼 또. 2012. 4. 19. 신경숙.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는 공감 이사회 조찬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다. 7시 30분의 조찬 회의라니. 나로서
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공감 이사회가 아니었다면 앞으로도 계속 해보지 못했을 일이었을 것이다. 내
가 예견했던 대로 나는 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회의에 늦고 연락이 잘 안되고 서류를 보내달
라고 청하면 함흥차사고 드디어 공감이 독립하고 첫 책자를 만드는데 소개 글을 쓰기로 하고 인터뷰까지
해놓고 마감이 한참 지난 지금에서야 쓰고 있다. 그런데도 나는 그 사이 공감에 매우 깊은 연대감을 갖게



되었는데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내가 보기엔 절대 쉽지 않은 일을 너무 행복하게 해내고 있어서다.

#2

공감은 사회적 약자들의 상황을 크게 9개 항목으로 분리해서 (여성, 장애, 이주·난민, 빈곤·복지, 국제 인권, 취약노동, 성소수자, 공익법일반, 공익법 교육·중개) 변호사들이 담당을 맡고 있다. 이주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 오랫동안 그들 곁에서 일해 온 소라미 변호사는 '사실 이주 여성들이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 와서 살아가는 것만도 벽찬데 거기에 한국법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 자체가 이미 그들에겐 벽처럼 느껴지는 일일 겁니다' 라고 한다. 왜 안 그럴겠는가. 중국 몽골 베트남 등에서 온 이주 여성들은 자신이 처한 억울한 상황에 대한 말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일 때가 있다고 한다. 거기다 한번 시작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 소송이라 중간 중간에 당사자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야 하는 때가 많다고. 아이를 남편에게 빼앗겨서 아이를 데리고 오고 싶어 소송을 낸 한 베트남 여성은 단 한 번도 웃지 않다가 몇 년 후에 소송에 이겨 아이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야 소라미 변호사를 향해 딱 한번 웃어 주더라,고 했다.

여성과 함께 빈곤·복지를 맡고 있는 차혜령 변호사는 법제 개선의 중요성을 말했다. 일반 소송인 경우에는 당사자가 직접 하니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끌어나가는 주체가 분명히 있는데, 공익인권 소송은 여러 단체와 관계자들과 함께 여럿이 시작한 일이 나중엔 변호사만 남아있는 때도 있다고 한다. 법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법제 개선까지 병행하게 되는데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했다. 몇 년에 걸쳐 성실히 준비를 해도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다음 회기로 넘어가기도 한다고. 소송에서 이기는 것 못지않게 법제 개선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끈기 있게 추구해나가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고도. 그러면서도 그는 납득이 안가고 불합리한 것들 중의 한 가지를 일로서 해결해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공감에서 일하는 게 보람되다고 했다. 예를 들어 용산참사 때 8개월을 함께 했는데 불공정재판이라 여겨져 사퇴했지만 그 8개월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생각에 괴로웠을 거라고.

공감에서 일하게 된지 이년 반이 된 윤지영 변호사는 최근 강제 동원된 사람이 사할린으로 가서 살게 된 이후 국적이 사라져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적을 되찾는 소송을 맡아 진행 중이다. 여태 한 번도 없었던 일



이라 이 소송이 어떤 결말을 가져오느냐에 따라 앞으로
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책임감에 벽찰
때가 있다고 했다. 그럴 것이다. 개인을 구제하는
일을 넘어서서 대표성을 띠는 사건을 맡고 있다
는 것은 예전에 없던 판례를 만드는 일이기도
할 것이니까. 윤지영 변호사는 ‘혹 내가 잘
못해 망치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을까를 생각하면...’ 말끝을
못 맺었다. 앞으로 새로 독립한 공감
에게 바라는 점은? 이라고 묻자 윤지영 변호사는 ‘중
교가 불교인데 예전에 절에 가게 되면 나 개인과 가족에 대해 기원을 했는
데 어느 순간 사회적 약자들이 제 권리를 찾게 되기를 바라는 기원이 늘었다’ 라는 말로 대신했
다. 공감이 앞으로도 그들과 함께 더 치열하게 앞으로 나아가 줄 것을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황필규 변호사는 주변을 움직이게 하는 활달한 웃음소리를 가졌다. 선하면서도 강단 있는 웃음소리의 소
유자는 공감의 초창기 멤버이다. 2012년 하버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청년시절부터 자신은 지금
‘공감’ 이 하는 일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변호사가 된 후 다른 곳에 일할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이 바로 공감 창립 멤버가 되는 것으로 자신의 꿈을 실현시킨 인물로 내겐 느껴졌다. 그는 진
심으로 ‘공감’ 같은 법률 재단이 많은 사회이길 바란다. 그래서 공감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동료나 후배
들이 새로운 제 2의 ‘공감’ 형태의 사무실을 탄생시킬 준비를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가서 열심히 그 일
을 돕는다. 그가 2005년에 처음 유엔난민기구와 협력하여 버마, 중국 등 난민 신청자들을 지원하게 되었
을 때 그들로부터 들었던 원망의 소리를 그는 잊지 않고 있었다. 그들이 화난 표정으로 도우려고 온 자신
을 에워싸고 소송해봐야 무슨 소송이나 승소란 없는 것 아니냐...이런 절망감으로 대하는 것을 봤을 때
난감했지만 그들과 함께 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했다. 그러는 사이 법도 바뀌었을 뿐 아니라
2005년도에만 해도 난민에 대한 판결문이 겨우 2개 밖에 없었으나 지금은 1000개 정도의 판결문이 있
다고 했다. 나도 그 변화가 무척 기뻐다. 그는 지금도 만족할 상태는 아니지만 1000개의 판결문이 생겼
다는 것은 사실관계조차 부정당할 만큼 선입견이 심했던 난민에 대한 생각이 사회적으로 변화했다는 증
거라고 했다. 나도 그 변화가 무척 기뻐다. 앞으로도 판결문은 계속 쌓여갈 것이다.



9년 전 아름다운 재단에서 공감이 탄생할 때부터 공감을 이끌어왔던 염형국 변호사는 여러 사회적 약자들 중 장애 쪽을 맡고 있는데 그는 어느 분야에서나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기득권층과 평범한 시민들과 접목시키는 매개자의 역할을 공감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자들의 목소리는 눈에 띄게 적극적이지 않으면 (그는 크레인에 올라간 김진숙씨 예를 들었다) 사그러들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사실이 그렇다. 그는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법률지원을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일반인에게 알리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공감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했다. 다 같이 함께 더불어 살자, 먼 우선은 서로를 알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일 것이다. 우리가 아주 자주 쓰는 소통이라는 말도 어찌 보면 기본적으로 서로가 적이 아니라 동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사회 구성원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다음에 가능한 일인 것처럼.

#3

내가 차병직 변호사로부터 받은 이메일의 내용과 다른 변동사항이 있다면 하버드에 유학 중이던 황필규 변호사는 돌아오고 박영아 변호사가 UCLA로 떠나 있다는 것이다. 국제법과 공익 일반을 담당하고 있는 박영아 변호사는 공감에서 일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일을 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 말했다고 한다.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책상을 빼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했다고. 장서연 변호사와는 인터뷰하는 날 함께 자리를 못해서 아쉽다. 새로 공감의 일원이 된 신옥미 간사는 공부를 안 한걸 후회해 본 적이 없는데 공감에 입사해 눈에 보이지 않는 약자들을 위해 열정적으로 뛰는 공감의 변호사들을 보면서 아, 나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변호사가 될 걸, 싶었다는 말을 들을 땐 나도...그런 생각이 들었다. 9년 동안 속해 있던 아름다운 재단으로부터 독립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동안 내가 궁금했던 것은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푹푹 뭉치게 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일부러 그 월급으로 아이들 데리고 지낼 수 있어요? 묻기도 했고, 공감의 일원이어서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이나? 묻기도 했다. 대답의 형식이 조금씩 달랐으나 월급은 많은 것은 아니나 적지도 않다는 것, 그리고 월급으로 환산될 수 없는 기쁨을 준다는 것, 일하는 것은 다 좋아서 뭘 하나 꼭 집어내서 말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내 질문이 늘 무안한 수준의 것이 되어 되돌아오는 것이 나는 기뻐다. 그들 중 누군가 기부자들이 기부를 할 때는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해달라는 뜻도 담긴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는 고맙기가



지 했다. 공감에 들어와서 일하고 싶어 하는 변호사들이 우리 사회에 아주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드디어 나도 그들과 함께 연대감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저 응원을 할 뿐이지만 누군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안심되고 든든한 일인가. 그들의 지극한 실천으로 각 분야에서 인권의 경계가 확장되는 것은 곧 우리 사회가 긍정적으로 변화해 간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그것을 '희망' 이라고 말하고 싶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회



이사장 안 경 환 /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은 누구 편인가 해묵은 논제이자 영원한 의문이다. 누구의 편도 아니다. 법은 정의의 편이다. 기회는 평등하고 절차는 공정해야 결과가 정의롭다. 공감이 확산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사 김 유 니 스 /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물을 마이크로하게 보기 보다는 크게 보려는 안목을 가지세요.
특히 삶에 있어 배우는 걸 즐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사 박 병 엽 / (주)팬택계열 부회장

강자와 약자가 더불어 살고 건전한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누구나 생각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공감'의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사 변 연 식 / 국제민주연대 대표

서러운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세상, 공감이 만들어 갑니다.
공감은 공공 얼어붙은 온누리를 녹여주는 봄바람입니다.
힘이 약한 사람들에게 더욱 많이 공감하는 공감이 되어요~~





이사 신 경 숙 / 작가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선에 서로에 대한 공감이 있기를 꿈꿔 봅니다

이사 한 상 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의 무지는 면책되어야 한다.
사람이 법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사람에게 봉사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법이 사람에게 다가가야 하기 때문이다.
공감은 사람의 법을 찾아가는 길이다.
모두가 다니는 길, 그 길에서 공감은 세상을 밝힌다.



이사 황 주 명 / 법무법인 총정 회장

공감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폭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데서 가능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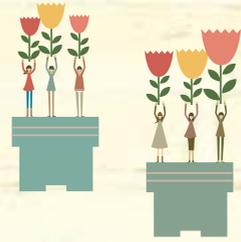
감사 오 종 석 / 안세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당신의 삶을 요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당신만의 의미와 위엄이 담긴 삶을 만드세요.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성공을 하고 얼마나 실패를 하는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하면서...





공감 구성원



박영아

나 없어도 세상은 돌아간다. 그러나 그 세상은 내 세상이 아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싶은 만큼 하면서 살자.



소라미

2013년 1월, 오랜동안 준비해온 獨立을 했습니다.
부모님 품 떠나 스스로 가정을 꾸릴 때처럼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합니다.
우리 사회 첫 전업적 공익변호사 단체로서, 공감 창립 구성원으로서
안락으로 보다 책임감 있는 활동을 다짐해 봅니다
지난 9년간 더디지만 꾸준히 걸 내어 걸어왔듯 앞으로도 길 찾아 헤쳐 나가겠습니다.
믿고 지지해준 가족, 동료, 그리고 기부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신옥미

혼자만의 천국은 있을 수 없기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안주영

'adagio non molto - 조금 느리네, 너무 느리지 않게라는
음악 빠르기말을 좋아합니다.
세상의 속도에 조금 느린 공감이지만, 그 움직임이 너무 느려지지 않는 것은
공감을 향한 묵묵한 응원과 지지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염 형 국

타인의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는 사회는 부끄러운 사회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윤 지 영

마음이 고달플 땐면 언저라도 웃음으로 나의 사랑과 믿음이 되는
동지들 앞에 나의 삶은 부끄럽진 않은지, 아니 부끄럽지 않도록.



장 서 연

공감 9년. '혼자서'가 아니고 '함께'여서 가능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늘 함께하는 공감이 되겠습니다.



전 은 미

새로운 꿈이 되는 인연들-
크고 작은 생각들과의 정직한 마주침 그리고 성찰
누구나 평화롭고 자유롭게 꿈꿀 날을 그리며
그렇게 함께 가는 길이 참 고맙습니다.



차 혜 령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를 돌아보고 돌아본다.
내가 꿈꾸던 것들, 공감이라는 터전에서 했던 일과 하지 못한 일,
할 수 없었던 일과 할 수 없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분별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힘이 내게 남아있기를.



황 필 규

그 동안은 주로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 문제에서 파생하는
이슈들을 다루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문제의 핵심에 좀 더 다가가는 활동을 하였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의 변함없고 지속적인 지지와 후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감 기부회원

공감의 별나고 특별한 기부 이야기

공감이 생기기 이전부터 만들어진 '공익변호사기금'은 지금의 공감이 있게 한 자양분입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공감에 모이는 기부금에는 더 많은 이야기와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공감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균관대 로스쿨 경쟁법학회

모의공정거래위원 경연대회에 나가 준우승을 했습니다.
상금을 공감으로 보내자는 제안에 선포 동의했습니다.



김정익, 최호정, 김호민, 김지호 가족

공감과와의 인연이 아버지에서 어머니로, 다시 자녀들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공감에는 가족 기부회원이 생겼습니다.

황지예

영어대회 우승상금을 두 번이나 공감에 기부했습니다.
뛰어난 실력보다 더 큰 이웃을 향한 마음이 참 고맙습니다.



대전 대사·목동 손풍한의원

한의학을 통해 건강한 우리, 건강한 가족을 꿈꾸는
두 곳의 한의원이 있습니다.
정성과 공경의 가치가 공감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농동성당 레지오 마리아 회 단원들

성당의 연말 모임에서 연극 공연으로 상을 받았습니다. 수년 전 어느 날, 주보를 통해 만났던 공감과의 인연을 잊지 않았습니다.

작곡가 신성아

초대권이 없는 공연을 열었습니다.
소리의 공감을, 공감으로의 공감을 만들었습니다.



입산 오마초등학교 어린이들

어린이 10명이 모여 아나바다 장터를 열어 수익금을 모았습니다. 연말, 스스로 산타가 된 어린이들은 공감에 큰 선물을 전해 주었습니다.

재능기부자 캘리그래피 작가 이산

획과 획을 붓끝으로 전해지는
힘찬 기운으로 공감을 응원합니다.
힘찬 글씨처럼, 힘을 내어봅니다.





공감 자원활동가

2005년 1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공감에서 활동한 자원활동가 총 **320**여 명.

2013년 1월 현재 **16**기 자원활동가 18명이 활동 중입니다.

6개월간 법률 문헌 조사, 통·번역 활동, 해외 법률 문헌 조사, 소송업무 지원, 실태조사 참여, 공감 활동 취재, 홍보 및 운영 활동 등 공감의 모든 활동을 함께해 준 자원활동가들.

함께 웃고 떠들며, 때로는 서로 서로 깨우치는 벗이 되고 때로는 힘이 되며 소중한 인연으로 함께 지낸 시간들... 공감의 지난 9년을 함께한 이들이 있어 지금의 공감이 가능했습니다.

이들이 사회 곳곳에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 함께 희망적인 미래를 그려나갈 생각을 하니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나의 롤모델이 되어 준 곳, 공감



김 연 주

재단법인 동천 펠로우 변호사 / 공감 11기, 2010년 상반기

최근에 면접 보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롤모델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나의 롤모델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나에게 '롤모델'은 공감인 것 같다. 공감을 처음 만난 것은 5년 전 쯤. 법 공부를 하고 있던 나와 활동가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었던 나에게 공감은 내가 도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림을 소개해 주었다. 꿈을 키우고 동기를 부여해주는 원동력이었다. 공감에서의 인턴 과정은 참 즐거웠다. 공감의 구성원들, 몇 개월을 동고동락한 인턴들, 그 밖에 공감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 참 소중한 인연이 되었다. 그리고 공감이 실제로 하고 있는 활동을 보고 듣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참 많은 것을 얻었다. 참 감사하다.

공감 인턴과정을 마친 후에도 공감과의 인연은 계속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공감은 나에게 '친정' 같은 곳이다. 공감인턴을 마친 후에도 계속해서 공감OB인턴으로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고, 내가 꿈을 찾아가는 과정을 응원해주고 고민 상담해주었던 우리 실장님, 그리고 공감 찾아갈 때마다 항상 같은 모습으로 반겨주는 공감 식구들이 있는 곳. 그리고 동천에서 시보 생활을 하면서 참여한 각종 활동과 행사에서 공감 구성원을 만나거나 이름이 적혀있는 것을 보았을 때의 그 반가움이란! 이곳은 친정이 틀림없다 -- 헤헤. 공감에서 인턴을 하였다는 경험은 이후에 시보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도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공감은 나에게, '동반자'가 되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공감의 구성원이 되고픈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나는 공감을 보며 공익변호사의 꿈을 키웠고 재단법인 동천에서 공익변호사로서의 활동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공감을 더 많이 만나고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마음이 따끈따끈하다. 그리고 나도 앞으로 많이 성장해서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고 함께 갈 수 있는 동반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새 출발을 응원하면서 함께해요! 화이팅 :)



공감과 나, 수많은 연결고리

이 호 림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 활동가 / 공감 8기, 2008년 하반기

“공감, 작고 소박하지만 중요한 가치들을 가르쳐준 곳. 좀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 공감과 항상 함께하고 싶습니다.”

인턴 생활을 마무리하며 내가 어떤 글을 남겼을까, 문득 궁금해져서 오랜만에 공감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내 사진 옆, 내가 쓴 게 틀림없을 문장인데 참 쑥스럽다. 아니,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항상’, ‘함께’ 하고 싶다고 썼을까. 부끄러운 것도 잠시, 조금 뻘뻘하게 생각해보니 4년 전 막연하게 적었을 저 말은 어느새 현실이 되어있다. 그때 꿈꾸었던 모습과는 다를지라도, 지금의 나는 더 단단하게 성장해 있고, 공감과 함께하고 있다.

나는 HIV/AIDS라는 질병에 대한 편견과 차별, 낙인을 없애기 위해,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라는 단체와 동성애자 인권연대의 HIV/AIDS 인권팀에서 활동하고 있다. 소수자 인권에 대한 막연한 관심이 HIV/AIDS 라는 특정 이슈에서의 활동으로 이어진 건 전적으로 공감 탓(!)이다. 작년 8월,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에이즈대회에서 장서연 변호사님이 진행되는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었다. 깊은 고민 없이 행사에 참가했던 내가 이 사건을 수습하는 데 힘을 보태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다. 참 사소하지만, 내 인생에 큰 영향을 준 우연이다.

공감은 오래전부터 HIV/AIDS 이슈에 함께 해왔기에, 활동하며 마주치는 크고 작은 연결고리는 수없이 많다. 에이즈 예방법을 공부하며, 예전에 정정훈 변호사님이 쓰신 글들을 읽고, 부산에서의 사건으로 ‘에이즈 전문 변호사’ 라는 별명을 얻으신 장서연 변호사님과는 인턴 할 때만큼 자주 만난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공감에서 참여했던 ‘감염인 인권지지 페이스 선언’은 그 해 ‘나누리+’의 에이즈의 날 캠페인이기도 했다. 공감의 활동과 나의 삶이 만나는 연결고리를 발견할 때마다, 든든한 마음과 함께, 내가 잘 살아가고 있음을 새삼 확인한다.

이제 활동을 시작한 지 1년 반,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전업활동가도 아니라, 스스로를 ‘활동가’ 라고 이야기하기는 어색하다. HIV/AIDS라는 질병에 대한 높은 편견 때문에 힘든 일도, 화나는 일도 많지만, 재미 있는 일을 찾아 나가며, 앞으로 하고 싶은 일도 많다. 무엇보다 큰 꿈은 조금씩 변화할 사회를 기대하면서,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활동을 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그 길의 언저리에는 언제나 공감이 있을 것이라. 새로운 인연들과 연결고리를 만들어 나가면서,

나에게 공감이란..?



나에게 공감이란 **아름다운 고향** 이다.

아름다운 사람들, 나의 초심이 머무는 곳이니깐요.

* 법무법인(유) 로고스에서 영혼을 치유(?)하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김성훈입니다 (공감 6기, 2007년 하반기)

나에게 공감이란 **인큐베이터** 이다.

이리저리 치이고 휩쓸리다가 '나'답게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성적지향·성별정체성법정책연구회에서 활동과 공부에 욕심내며 지내고 있는 선의입니다 (공감 7기, 2008년 상반기)



나에게 공감이란 **밀그림** 이다.

두루뭉술하게 꿈꾸어왔던 삶의 그림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막연하게 '어떻게 살고 싶다는 생각만 해오던 저에게 '무엇을' 하고 살아야겠다는 답을 주었고, 지난한 고시 생활에 지쳐있던 때에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귀한 밀그림 위에 나만의 색깔을 얹어 보고자 합니다. 제 인생의 멘토 공감. 앞으로 꼭 함께 하고 싶습니다.

* 공익전담 변호사의 길을 모색 중인 사법연수생(42기) 임자운입니다 (2008년/09년 여름)

나에게 공감이란 **노릇돌** 이다.

말에 오르기 위해선 밑바닥에 토대가 되는 노릇돌이 필요합니다. 사회를 보고 또 전달하는 일을 하는 저로서 다양한 삶을 관찰할 필요가 있었죠. 그 단초를 만들어 준 곳이 공감입니다. 우리 사회 약자, 소수자들의 삶을 이해하고 인권이란 보편적 가치를 피부로 와 닿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이곳과의 인연 후 언론인으로서 제 역할에 대한 고민은 한층 깊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공감이 많은 이들에게 좋은 가치를 전하는 노릇돌이 되어주길...



* 언론사에 들어간 지 4년 됐고, 1년에 한 두 번은 누군가의 치열한 삶에 울컥하는데, 그 느낌 잊지 않으려 무던히 애를 쓰고 있는 김현수입니다 (공감 9기, 2009년 상반기)



나에게 공감이란 **형**이다.

아름을 조직, 설계, 운영하는 데 있어 보고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 함께 나누며 성장하는 참된 배움의 사회를 지향하는 교육시민단체 '아름다운 배움' 대표
고원형입니다 (공감 9기, 2009년 상반기)

나에게 공감이란 **초록색 지붕의 집**이다.

빨강머리 앤이 초록색 지붕의 집에서 평생의 은인을 만나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저도 공감 안에서 정말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휴학 중이고 희망제작소 사회혁신센터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장운호입니다 (공감 12기, 2010년 하반기)



나에게 공감이란 **가능성**이다.

어떤 단어든, 어떤 의미든 잘 들어맞는, 그런 곳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 꿈 꿀 수 있는 곳.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들이 상상하는 대로 빛어져 가는 곳. 그래서 더 아름다운 곳, 그리고 더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인 곳. 공감은 희망이며, 꿈이며, 사랑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에게 '공감'은 '가능성'입니다.

*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김민욱입니다 (공감 13기, 2011년 상반기)

나에게 공감이란 **어른을 위한 동화책**이다.

어릴 때 보는 동화책에서는 세상이 아름답다고만 표현하잖아요. 실제로는 그 빛에 비해 정말 어둠이 짙고 우울한 모습이 많다는 걸 알게 되죠. 어른이 되어서 그 현실에 주눅 들고 체념하려고 할 때 '어른을 위한 동화책'을 보면, 그 어둠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고 묻혀있는 정의를 개척하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공감은 어둠이나 소외층에 대해 적극적으로 밝히고 문제제기 하면서 우리 사회에 적당한 현실 인식과 많은 희망을 주기 때문에, 어른을 위한 동화책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대학생활을 막 마쳤습니다. 하는 일은 다름지라도 세상이 희망을 갖고 한 발짝씩 내딛게 만드는 데 '공감'처럼 일조하며 살고 싶은 임수진입니다 (공감 13기, 2011년 상반기)



나에게 공감은 **목어**다.

여행 중 절에 있는 나무물고기 목어의 의미를 들으며 공감을 생각했어요. 공감은 저에게 항상 나의 꿈, 나의 행복 이외의 더 넓은 세상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가지도록 해주는 곳이에요. 내가 아닌 우리 사회의 다양한 약자, 소수자들을 위해 항상 두 눈 부릅뜨고 주위를 살피는 공감을 생각하며, 저도 제 주위에서 그냥 지나쳐버리기 쉬운 우리 모두의 권리와 행복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제 갓 사회에 입문한 새내기 남궁술입니다. 첫 월급을 받아 이제는 공감의 기부자가 될 생각으로 설레고 있어요! (공감 14기, 2011년 하반기)

기획기사 PART 1 공감이 달라졌어요

공감,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공감, 지난 9년

공감은 지난 9년간 쉽 없이 달려왔습니다.

2004년 1월, 공감은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직속 팀으로 만들어진 ‘공익변호사그룹’이었습니다. 모금하여 나눔이 필요한 곳에 배분하는 일을 주로 하는 아름다운재단은 ‘공익변호사기금’을 토대로 공감을 공익변호사단체로 키워내기로 하였습니다. 영리활동을 하지 않고 근무시간 전부를 공익활동에 집중하는, 국내 최초의 ‘비영리·전업·공익변호사단체’ 공감의 출발입니다.



9년 동안 공감은 공간, 활동영역, 구성원, ……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씩 변화하여 왔습니다. 아름다운재단 별관 상임이사실 옆 배란다를 개조한 방에서 가회동으로, 다시 원서동으로 이사하였고, 구성원 수는 4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났으며, 여성·장애·이주와 난민·빈곤과 복지라는 4개의 영역에서 시작한 활동은 취약노동·성소수자·국제인권·공익법 일반·공익법 교육과 중개라는 5개의 영역을 더하며 그 폭이 넓어졌습니다. 또한 구성원 전원 논의로 사업계획을 정하고 실행하는 나름의 의사결정구조를 정착시켰으며, 초기부터 공감의 재정 기반인 ‘공익변호사기금’을 아름다운재단의 모금팀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홍보하고 모금하면서 독립된 공익변호사단체로 설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공감 첫 해 ‘1년을 갈 수 있을까’ 하는 주위의 우려를 뒤로 하고 매년 ‘살아남았다’는 의미 이상의 생존 신고를 하였으며 이제는 아름다운재단에서 자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변하는 것

2012년, 공감은 ‘재단법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2012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10월 재단법인 설립등기를 마친 후, 12월 1일 드디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라는 이름으로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자립이라고도, 독립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창립의 가장 뚜렷하고 분명한 변화는 조직과 재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 안의 한 개 팀이었던 공감은 이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라는 하나의 법인으로 오롯이 섭니다.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의 경계를 확장한다는 공감의 지향과 함께 할 이사진을 새로이 꾸리고, 공익법활동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사무국과 내부 규정도 정비하였습니다.

공감의 변호사와 간사들이 일하는 곳은 서울 원서동 사무실 그대로이지만 그 신분은 아름다운재단 직원에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직원으로 바뀝니다. 아름다운재단의 공익변호사기금에 후원하시던 기부회원들은 이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기부회원으로 그 뜻을 함께 하십니다.

모금단체인 아름다운재단의 틀에서 벗어나 공익인권법단체로 독자적인 활동이 가능해진 만큼, 공감은 독립된 조직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살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활동의 성과가 조금씩 쌓여가면서 공감은 안과 밖에서 조직의 확대나 활동의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받았습니다. 이런 안팎의 요구들 중 점점 수요가 늘어나고 있거나 공감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분야를 정하여 그동안 공감이 해 왔던 것보다 안정적이고 상시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공감 내 센터 설치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공익법중개센터(가칭)’는 공익활동을 원하는 로펌과 개인 변호사들을 변호사가 필요한 인권 현장에 연계할 수 있는 공익법 중개, 미래의 공익변호사를 키우는 공익법 교육을 기치로 공익법활동의 확산을 꾀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인권 법캠프, 사법연수생·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 실무수습, 공익변호사 라운드테이블, 로펌 공익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쌓아온 공감의 경험이 법률가양성제도와 법률시장의 변화라는 환경에서 더 잘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국제인권센터(가칭)’는 그동안 소수자 인권 옹호를 위해 활용하던 국제인권법에 관한 연구와 현장 활동을 체계화하고 국내외의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려고 합니다.

이밖에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창립을 계기로 하여 공감의 전망과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과 활동계획들을

수시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들이 실행되는 모습을 2013년, 2014년, 2015년, …… 매년 발간되는 연간 활동보고서, 공감 뉴스레터,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좌표, 변하지 않는 것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공감은 ‘비영리로 운영되는 공익법단체가 한국 사회에서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해 온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공감이 현재 서 있는 위치를 봅니다. ‘이주민과 장애인의 인권 옹호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활동하였다’, ‘변호사들이 제대로 일할 수 없거나 일하지 않았던 부분을 찾아 개척하였다’, ‘독특한 개성이 있는 공익법단체로 자리매김하였다’는 등의 과분한 평가에 자신감을 얻기도 하지만, 종종 아니 자주 공감이 지향하는 인권의 경계 확장과 법의 변화는 더디게 느껴집니다. 공감은 인권의 당사자들과 인권활동가, 단체들과 함께 만든 성과들 그리고 그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공감의 좌표를 설정하겠습니다.

지금 공감은 9년간 걸어온 시간만큼 여러 사람들과 단체들에게서 다양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공감을 모델로 하지만 또다른 방식으로 공익법활동을 펼쳐나가는 공익변호사단체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프로보노로 공익활동하기를 원하는 변호사와 전업 공익변호사가 되기를 원하는 예비법률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도 공감에 어떠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문제로 인식되지 못하거나 이제 서서히 인권과 권리의 경계로 들어서는 이슈들, 지금까지 활동해 온 공감의 활동영역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더 깊이, 더 끈질기게 파고들어야 할 문제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방식으로 활동할 것일가는 공감의 여전한 과제입니다.

조직과 재정이라는 눈에 띄는 분명한 변화 외에는 지금껏 공감이 그러했던 것처럼 많은 고민과 질문들을 가지고 모색과 전망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감은 꿈꿀 것입니다. 공익법활동의 중심이면서도, 각각의 인권 영역들과 단체들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우리 사회에서 긴요하게 필요한 인권 영역에 역량을 집중하면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공감의 한정된 자원을 이용하여 가능한 역할들을 최대한 하겠다는. 센터이자 허브를, 집중과 동시에 확장을 꿈꾸는 공감은 오래도록 지속 가능한 공익법단체로 살



아남겠습니다.

공감의 변화와 새로운 모색의 와중에도 세 가지 지향 -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의 경계를 확장하겠다는, 더 나은 사회로의 변화를 일구는 실천을 법으로 하겠다는, 공익법활동을 모든 법률가들에게로 확산하겠다는 공감의 지향점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권과 공익을 향한 공감의 뜻을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더 나은 세계를 함께 꿈꾸는 공감의 기부회원과 후원자들, 그리고 인권의 당사자들도 변함없이 그 길 위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공감 9년 평가

기획기사 PART 2

기획좌담회

공감 독립을 앞두고 2012년 12월 4일 현장 활동가와 전문가들을 모시고 공감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가야할 길에 대해 조언을 구했습니다. 지면 관계상 전문이 아니라 요약 정리된 글을 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2. 12. 4. 18:30~21:30.

* 좌장 : 한상희 (공감 이사)

* 패널(가나다순)

- 권영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 나영정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박옥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대표)
- 윤정숙 (아름다운재단 전 상임이사)
- 이병주 (대한변호사협회 기획이사)

* 발제 : 염형국 (공감 변호사)

* 정리 : 소라미 (공감 변호사)

* 녹취록 정리 : 흥인 (공감 자원활동가)

한상희 ▶



그동안 공감이 많은 일들을 해왔고, 기여가 많았죠. 선도적인 판결도 얻어냈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공감과 유사한 변호사 단체들이 새로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독보적으로 공익활동이라는 영역을 개척해왔지만 이제는 경쟁을 하면서 자기 영역을 보다 심화시켜야 될 필요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거기다가 이제 10년이라는, 수치상으로는 의미가 있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다보니까 아마 내부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고민이 많은가 봅니다. 그 고민을 이 자리에서 한번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감 탄생...그리고 공감 현상

권영국 ▶



1988년도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설립 되었고, 2001년도에는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법률원이 설립되었죠. 그 다음에 2004년도에 공감이 만들어졌죠. **저는 공감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노동이나 이런 문제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관심사항이었어요. 그게 아무리 어렵고 하더라도 누구나 다 이게 사회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는 상태에서 그걸 자기 전문분야로 하겠다는 결단을 하는 식이었다면, **공감이 처음 선택했던 부분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꺼려하는 그런 분야였죠. 웬지 좀 잘 모르고, 낯설고.** 제가 노동부분을 하고 있지만 이주여성이나 아동에 천착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내 노동자들 문제도 항상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늘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이주노동문제를 꼭 해결하고 가야 되냐, 이런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외면 받고 있던, 또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부분을 공감이 자신의 영역으로 선택한 부분이 성공의 단초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영정 ▶



조금만 덧붙이면, 2004년도에 공감이 단체에 변호사를 파견했잖아요. 그때 한국레즈비언상담소에 정정훈 변호사가 파견되었어요. 성소수자 영역에 법 제도조차 없는 상태에서 변호사가 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저를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 했어요. 그래도 일단 오시라고 해보자했대요. 남자가 사무실에 들어온 적도 없는데 말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는 것 같아요.** 상담사건에 대한 자문과 해외 상황에 대한 공유를 해주셨다고 들었는데 굉장히 좋은 교류였다고 생각해요. **공감이 소송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후원으로 운영돼서 그만큼 소송으로부터 자율성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이 소송으로 일을 만들어 낼 수 없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파견 나올 수 있**

게 했던 것 같고, 외부로 드러나는 일 없이 단체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조건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윤정숙 ▶



2006년도 1월에 아름다운재단에 상임이사로 일하러 와서 공감을 알고 굉장히 놀랐어요. 신인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처럼, 어릴 때 씨 없는 수박을 보고 신기했던 것처럼 말이죠. 시민사회에 새로운 종자가 탄생했구나 싶었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포스트 민변’ 이구나. 민변이 변호사들 자신들의 조직을 갖고 형식적인 민주주의, 민주주의 제도화에 포커스를 맞추었다면 **공감은 일상의 민주주의, 삶의 민주주의 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법이라든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의(definition)와 경계라는 게, 법과 인권의 문제를 현장에 얼마나 유연하고 실험적으로 접목시키느냐에 따라서 막 달라지는 것인데, 저는 공감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관심 안 갖는 문제가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문제를 건드려야지만 인권과 공익법의 경계가 확 드러나게 되고 아무도 듣지 않았던 그 소리를 사회적으로 경청하게 만들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저는 공감의 존재감이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굉장히 컸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영정 ▶

한편으로 우려되는 점은, 최근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가 트랜스젠더의 모성권과 부성권에 대해 공감 블로그에 칼럼을 썼어요. 굉장히 선도적인 의제였는데, 어떤 공감 기부자가 “공감이 이런 것도 하느냐, 난 동의를 할 수 없다”는 댓글을 달았어요. 그랬을 때 **이자율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수많은 기부자들이 있고 모두 다양할텐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맞춰나갈까 걱정되는 거죠. 특히 성소수자 문제에 있어서는 잘 모르거나 동의하지 않을 기부자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말이죠.

윤정숙 ▶

제가 작년에 한겨레에 ‘공감현상’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어요. 그 때가 막 어필(공익인권법센터), 희망법(공익인권변호사모임) 등이 생길 때였어요, 올 것이 왔구나 싶었어요. **제2의 공감, 제3의 공감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아, 이것이야말로 공감 현상이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공감은 운동적으로나, 조직형태나, 전문성과 사회가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와 같은 여러 가지 지점에서 새롭게 해석될 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부분이고 다 미개척지여서 문만 열고 들어가면 이슈가 되는 상태이니 너무 책임감이 많았겠다 싶어요.**

한상희 ▶ 그렇죠, 공감이 그동안 법의 경계를 흐트러 놓았지요. 법의 변두리에 있는 부분들을 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전문가 집단과 시민사회의 접목을, 소통하는 방식을 만들어냈지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들, NGO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는 또 다른 대안을 마련했고, 법의 영역에서 자기들의 주장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냈죠.

윤정숙 ▶ 대학생이나 청년들 특강을 하러 갈 때 사례로 공감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놀라워해요. “저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자기들 머릿속에 있는 변호사에 대한 고정관념을 흔드는 삶이 있다는 것이지요. 가치를 지향하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거구나, 의미로 보상받는 삶이 어떤 것이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 젊은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감은 운동적인 측면 이외에도 개인의 삶의 선택이라는 측면에서도 다 새로운 위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변호사들의 선의(善意)에 접속하라

이병주 ▶



저는 약간 멀리 떨어져서 보면서 들었던 느낌이, ‘human rights’ 이라고 하면 그 가치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폭이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일을 하는 분들을 존경하고 도와드리고 싶기는 하지만, 그것을 모든 사람이 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공감을 받기는 어려운 한계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감이 조금 더 보편적인 기반을 가진 ‘public interest’ 로 나가게 된 것 같은데요. 한쪽에는 공감이나 어필과 같이 헌신하는 일부 변호사들이 있어요. 다른 한편에는 헌신을 못하는 변호사들이 있는데 둘 사이의 간극이 너무 멀어요. 선한 의도 쪽으로 가려면 전부 다 버리고 뛰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고민 끝에 뛰어들지 못하면 그냥 ‘물권’ 변호사로 살면서 재미가 없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부분의 간극이 해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선도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일반 변호사들의 선한 의도가 실질적인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야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상희 ▶ 좀 그런 면도 있네요, 그러니까 공감이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것은 상당히 효과를 거뒀는데 변호사 사회 내부적인 소통의 범위를 넓혀 나가는 것도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네요. 소통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공감이 이야기하는 소수자 인권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법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니까.

이병주 ▶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공익활동을 앞장 선 사람들, 거기 따라가고 싶은 사람들, 로펌의 공익활동을 하는 담당자들, 직접 헌신은 못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크게 묶어서 가령 **'공익변호사회'** 같은 형태로 해서 그걸 서로 연결을 시켰으면 합니다. 공감에 현재 가지고 있는 힘으로 지금까지 해온 일들도 열심히 하면서 그런 역할로까지 나아간다면 영향력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정숙 ▶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전 **일반 변호사들은 공감을 어떻게 보는지 정말 궁금해요.** 좋게만 볼 것 같지가 않은데.

한상희 ▶ 공감 같은 경우에 이주노동자라든지 성소수자라든지 이런 사실 우리 법에서는 생소한 영역에 있는 이야기들을 갖고 와서 막 이상한 주장들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좀 **성가시게 여기지는 않나요?**

이병주 ▶ 로펌에서 그런 사건을 직접 하는 것은 꺾꺾꺾요. 기업체들하고 부딪히는 일을 하기 어렵고, 정치적으로 한쪽 편을 든다는 느낌이 드는 일을 하기도 어렵죠. 민변에 비하면 공감은 부담이 약간 덜해요. **공감은 좀 뉴트럴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름을 좀 잘 지었어요. 이름을 순하게 지어서.** [일동 웃음] 다들 좋게 봐요. 로펌 같은 경우 공감과 제휴를 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만큼 공감이 이미 브랜드효과가 있기 때문 인거죠.

권영국 ▶ 공감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 하나가, 굉장히 중립적인 입장으로 사람들에게 선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립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지속될 것이냐, 이 문제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노동 문제나 주거권 문제나 이런 것들이 보통 거대자본하고 부딪히기 시작하면 이게 극단적으로 이해관계가 대립이 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입장에 설 것이냐에 대한 자기선택이 반드시 요구받게 되죠. **공감이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영역으로서 인식되어온 것은 거대자본하고의 충돌지점까지는 아직 안 왔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이죠, 종합해보면. 소수자에 대한 인권문제가 실제 거대자본과의 상충문제까지는 도달하지 않았다는 측면도 함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공감의 존재감이 대단히 크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 못해요. 그러면 실제 영향력은 어떻게 될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시작 단계를 아주 많이 벗어나지는 못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경신 ▶



5년 전 공감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동안 이미 소수자,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 인권의 경계 확장 이런 부분이 공감의 전문적인 분야가 된 것 같고요. 오랫동안 각 개인들을 만나 봐도 그런 분야에서 다른 변호사들보다 노하우랄지 감성, 이런 것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새로운 의제 설정을 고민하는 것 같은데 NGO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어떤 분야를 하고 있으면 계속 의제가 터져 주거든요. 그리고 오랫동안 활동을 해서 전문성이 쌓인 분야에서는 출판사업과 같이 좀 더 깊이 들어가는 데 선도적이고 전문적인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익법 활동의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공감의 존재가 로스쿨 출범과 잘 맞물려서 상당히 좋은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공감을 알게 되고 공감을 통해 참여연대나 민변과 같이 좀더 전투를 벌이는 단체들을 알게 되는 식으로, 80년대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불씨를 마음속에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Common Good’을 떠올려라

권영국 ▶

공익법의 영역을 어떤 식으로 확장해 낼 것이냐를 보면 일반변호사들과 공감 변호사들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매울 것이냐가 중요해요. 환경문제 같은 경우는 일반변호사들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공감이 담당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일반변호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제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간극을 좁혀나가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역을 확대하는 방법은, 한 측면에서는 공감과 같은 형태의 공익법 활동을 직접 담당하는 단체의 확산도 필요하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공익변호사회’, ‘공익변호사단’ 그런 식으로 우군을 형성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정숙 ▶

일정기간 동안 공감에게 멀티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좋은 공익법을 활동가들을 양성하거나 일반 변호사를 관심 분야의 공익활동과 매칭시켜주는 허브 역할이 필요 하고, 또 한편으로는 독자적 어젠다를 가지고 몇 가지의 주요한 영역에서는 priority를 갖는 하나의 법률 전문 운동체로서의 고유한 역할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공감이 public good 과 common good, 이것을 떠올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공감이 기존의 운동단체들이 갖고 있는 세팅 안으로 보수와 진보 그런 이분법으로 끼어들어가기 시작하면 공감이 해야 될 많은 역할들을 잘 못하는 것 아닌가 생각해요. 앞으로 비정규직 문제, 성정체성 문제, 개발과 생태 문제, 군가산점 문제 같은 것들의 경우는 굳이 진보/보수 그 틀이 아니어도 사람마다 굉장히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

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 공감은 자기 입장을 얼마만큼 커밍아웃 할 거냐에 대해서 저는 아주 스마트한 계산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그 일을 해 나가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확 내지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슈별로, 또 이슈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공론화되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느냐 그런 수위를 잘 따져서 입장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병주 ▶

최근에 변호사들이 공익 활동을 한다고 하면 그 메뉴들이 다 비슷해요. 공감 하는 것과 비슷해요. 하지만 그것이 공익법 활동의 전부가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변호사협회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것은, 지금 굉장히 많은 변호사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사익으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괴로워 하지만 그렇다고 몸을 던져서 공익변호사가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역으로 가서 시의회, 구의회에서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법을 가지고 일반적인 아젠다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 시도한다면 돈 버는 일하고 공익을 같이 넘나들며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영역도 결국은 common good이나 public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공감이 전체를 더 넓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소수자를 돕는 일에 더 집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공익부분을 공감이 다 커버하려고 욕심낼 것 없이 좀 픽스해 가는 것이方便일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한상희 ▶

이야기의 흐름이 새로운 법 영역은 하지 말라는 식으로 가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와 같은 주제, 즉 소수자 인권 옹호를 계속 하되, 외연을 확장해서 사회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나아가라는 쪽으로요.

공감만 잘 나가서는 안된다!

권영국 ▶

이젠 과연 공감이 전문성을 쌓아온 분야를 어떤 식으로 잘 개척할 것이냐는 부분이 남는데요, 자기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과 터져 나오는 인권문제에 적절하게 기동성 있게 대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조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문성이라는 것도 새로운 인권 문제에 대응하지 못하면 퇴보하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들은 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역할분담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데, 공감으로서는 다양한 영역과 계층으로부터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굉장히 전투적으로 싸움을 벌여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기존의 법률가단체인 민변 더 크게는 서울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공감으로서의 특성, 민변의 특성, 변호사회의 특성이 서로 살아가지고 법률가 단체가 제대로 작동하게 되는 부분이 있죠. 약간 거칠게 이야기하면, **공감만 잘나가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공감도 잘 나가고 변호사회도 자기 역할을 해내야 전체적으로 법률가 단체가 사는 거지요.**

박옥순 ▶ 저희가 그렇게 회원 중심의 변호사협회와 연대해서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그게 사실 활동이 잘 안 되죠. 되게 열심히 하시고 싶어 하고 상담도 하시고 그러는데, 딱 그 수위예요. 우리도 몇 번은 연락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 다음부터 연락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병주 ▶ 제가 변호사단체에서 한 2년 활동 해보니까 고충을 좀 알겠는 것이, 역할이 분명히 달라요. 공감이 할 수 있는 것하고 민변이 다르고 또 변호사단체가 다르고. 변호사단체는 대표성이 있을 수가 있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전반적으로 변호사 사회의 이념적인 스펙트럼을 반영을 해야 하니까, 변호사단체는 논쟁적인 것을 하기는 참 어려워요. 제가 해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변호사단체로)들어오는 것하고 밖에 있는 것하고는 달라요. 제가 안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도, 들어와서 여기(변호사단체) 안에서 주장을 하면은 일이 될 수가 있고 밖에 있으면 누가 그것을 대신 나서서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공감의 상황에서는 뉴트리얼하다거나 순하거나 착하거나 이런 인상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변호사단체로)들어와야 해요. 들어와서 여기서 하면 돼요.**

한상희 ▶ 공감이 지방에 지부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박옥순 ▶ 소수자 영역은 사람하고 직접 만나는 것이라서 어떤 사람이냐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부를 만들더라도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법률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함께 뭔가를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한데요. **공감이 이렇게 성장하고 확장되어 왔던 결정적인 사유는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마음, 그 열정, 전문성, 비전, 마인드 이런 것들이 큰 자산이 되었다고 봐요.** 솔직히 무슨 일이 있으면 서울변호사회로 연락하는 것보다는 공감이나 뭐 민변이나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되죠. 색깔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 말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색깔을 드



러내도 저는 좋아할 거고 안 드러내도 좋아할 건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대중들이 공감**을 발견을 하겠느냐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 재미있는 것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권영국 ▶

선불리 양을 키우겠다는 생각에서 지부를 두거나 하는 방식은 자칫하면 지금 이야기했듯이 사람 중심으로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는 장애요소가 될 수 있겠네요.

“공감이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라는 질타가 나와야 한다

한상희 ▶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요. 마무리 할 시간이네요. 못하신 좋은 말씀들 있으면 해주시죠

나영정 ▶

최근에 드는 고민은 소수자들의 문제가 각각 독립된 영역의 문제라기보다는 같이 집합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어떤 지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이에요. 예를 들면 성소수자 운동도 장애인이나 이주나 여성운동과 함께 이야기해야 할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장서연 변호사의 경우에는 장애, 이주, 성소수자 분야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텐데, 소수자 운동의 새로운 전략을 짜 가는 상황에서 **공감의 역할을 좁은 의미의 소송이나 법률 활동에 한정하지 않고 자원이나 네트워킹 등 어떤 부분을 기여할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현장에 변호사를 파견하는 방식의 활동을 다시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박경신 ▶

공감이 더 발전을 하려면 조금 더 특정해서 가야할 것이, 소라미 변호사라서 소변호사한테 물어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분야라서 소변호사한테 연락이 간다, 이렇게 정리가 자연스럽게 되어야 할 겁니다. 아까 공감의 전문 분야가 거대자본과 크게 부딪치지 않는 점에 대해 이야기 했는데, 그 분야는 또 변호사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공감에서는 다른, 법률의 손길이 닿지 않는 면부터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분야에 집중을 하게 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공감의 전문 분야가 되었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저 단체는 이런 일이 터졌는데 왜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지?” 이런 소리가 나와야 합니다.** 그 소리가 어떻게 보면 질타로 들리지만 어떤 면은 그 단체의 위상을 얘기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병주 ▶ 변호사 사회의 흐름으로 보면, 지금이 뭔가 무르익은 때 같이 보여요. 공감이 먼저 하고, 또 같이 하자고 하는 곳들이 후두둑 나오고. 로펌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다 공익을 말하고, 그 다음에 변호사 숫자가 많아지니까 공익 쪽 하겠다는 사람 숫자도 늘어나고. **공감이나 유사한 단체들, 민변, 변호사단체까지 포함해서 같이 힘을 모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공감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일단은 앞장 설 수 있을 만한 근거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정숙 ▶ 저는 약간 강조하고 싶은 것이, 걱정이 되는 게 **공감이 예를 들면 '법조계의 참여연대' 식의 위상을 자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법조계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보수성을 고려했을 때나, 시민들에게 이제 공익이나 공공선 이런 개념이 좀 호의적으로 막 싹트고 있는 점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좀 더 하시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권영국 ▶ 실제로 공익 활동을 지향하는, 또 그걸 부러워하는 젊은 층들이 대단히 많죠. 법학전문 대학원 안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것이 인권(공익)법학회인 것을 봐도 알 수 있죠. 젊은 사람들이 공익에 대하여 “이게 좋은 일이다”라는 느낌을 알게 모르게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박옥순 ▶ **공감이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법률활동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저는 공감에 바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우리가 계속 찾아갈 수 있도록, 전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정말 욕하고 다 아픔을 갖고 연락하는 사람들이고 정말 갈 데 없어서 연락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받아주는 것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것을 어렵다고 그냥 두지 않고, 잘 안될 것 같으면 저희들 같은 단체들한테 함께 하자고 제안하는 것, 그런 것들을 공감이 계속해서 가져가주면 좋겠어요.

한상희 ▶ 모든 칭찬은 무엇이든 부담이죠, 그것이 그렇게 계속해서 나가라는 명령이니까요. 긴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 고맙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죠. 고맙습니다.



공감 9년의 발자취

2004

국내 최초의 전업적 공익변호사단체로 첫발을 내딛다



2005

소수자·사회적 약자의 구체적 삶의 현장으로!

• 공익단체에 변호사를 파견합니다! 총 4차례 파견



소송을 통해 소수자 인권의 경계에 질문을 던지다

- 장애아동의 보험가입 차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 산업연수생에 대한 부당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 버마 민주화 활동가 난민인정불허결정처분취소 소송
- 성차별·인종차별 국제결혼광고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가정폭력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가사소송
- 한국장애인인권상 및 제20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수상

2006



2007

인권 현장 단체의 든든한 파트너로 거듭나다

- 희망변론 프로젝트를 통해 인권단체와 상시적 네트워크 구축
- 신뢰를 바탕으로 한 연대활동 강화
- 필리핀 카톨릭 추기경으로부터 감사패 수상



2008

공익법 운동의 확산에 시동을 걸다

- 1회 인권법 캠프 개최
- 로펌 프로보노 간담회
- 법무법인 총정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법률지원 협약 중개
- 법조협회 제2회 사회봉사단체 우수단체 선정



2009

주거권 옹호를 위한 변론활동 등 '빈곤과 복지' 영역의 활동에 박차를 가하다

- 용산참사 대응
- 뉴타운·재개발 구역 세입자 주거이전비 청구 집단소송
- 비닐하우스촌 주민 전입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인전문기관 의뢰 부양료 심판 청구
- 노숙인 쉼터 설치·운영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소송



2010

국제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인권옹호 활동을 펼치다

- 아시아태평양 난민권리 네트워크 의장 취임
- 이주민 법률지원을 위한 한국·필리핀·일본 이주 프로젝트
- 인권에 기초한 사법접근권 아시아 컨소시엄 의장 취임
- 일가재단 주최 '청년 일가상' 수상
- '공익제보자와 함께 하는 모임' 으로부터 감사패 수상



2011

사회 변화를 위한 입법활동의 결실을 맺다

- 입양특례법 제정
- 난민법 제정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정
- 법조언론인클럽 수여 '올해의 법조인상' 수상



2012

성소수자, 취약 노동을 위한 활동을 본격화하다

-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부당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청소년 노동감독 정보공개청구소송'
-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한 법 제정 활동
-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법 연구회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젠더 정체성과 섹슈얼리티 법 정책에 관한 '레인보우 라이징 심포지엄'





공감의 활동

여 성 인 권
장 애 인 권
이 주 · 난 민
빈 곤 · 복 지
국 제 인 권
성 소 수 자
취 약 노 동
공 익 법 일 반
공 익 법 교 육 · 중 개

여성인권

9년을 돌아보며

활동 초기, 공감은 1주일에 3~4일씩 현장 단체로 파견나갔습니다. 여성 단체 중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장애여성 '공감', 기지촌 여성을 지원하는 의정부 '두레방', 성매매피해 여성을 지원하는 '다시함께센터'로 직접 출퇴근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여성들의 이야기는 새롭고 낯설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 제정 직전·후였던 활동 초기에는 성매매피해 여성에 대한 법률조력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곧 정부 차원에서 법률구조기금이 마련되었고, 법률지원단이 꾸려졌습니다. 공감 차원에서 개별 성매매 피해 사건을 지원할 필요성이 줄었습니다. 여성 인권 분야에 많은 변호사들이 결합해 있다고 들었지만 이주여성과 장애여성 지원 현장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파견 사업으로 첫 인연을 맺었던 단체와 공감은 지속적으로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단체와 진행한 거의 모든 활동이 해당 영역에서 '첫' 법률 활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가며 힘들기보다는 신바람났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결국 '제도 개선'이라는 관문에 맞닥뜨렸습니다.

다시, 긴 호흡으로!

여전히 갈 길이 멍니다. 첫 걸음을 떴을 때보다 속도도 더디고, 때론 제자리걸음인 것 같아 지칠 때도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던 처음, 현장에서 만난 당사자와 활동가들의 도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수 있었던 때를 떠올려 봅니다. 보다 긴 호흡으로, 현장에서 인권활동가와 함께 머무르고, 소리 듣고, 더 많은 사람과 공감하기 위해 계속해서 힘내겠습니다.

국제결혼 : 국제결혼 '중개' 시스템, 문제 있습니다!

2000년대 한국사회에는 국제결혼이 새로운 결혼 풍속도로 자리잡았습니다. 열쌍 중 한쌍이 국제결혼을 선택했습니다. 갑작스레 국제결혼이 증가한 데에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활약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국제결혼 중개업은 '사람'을 소개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규제없이 이윤창출을 위한 상행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가난한 나라의 여성을 상품화하는 방식으로 성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인 광고가 활개를 쳤습니다. 또한 현지에서 단기 속성으로 이루어지는 국제결혼 중개는 '매매혼'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감은 활동 초기부터 국제결혼 중개 체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주목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소송, 제도개선 활동을 끈질기게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2008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그 후 수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가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국제결혼 중개 구조 현장은 쉽사리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도개선이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깨달음을 주는 지점입니다.



2005

국제결혼 중개 시스템 현지조사 및 국제결혼 중개 구조 개선을 위한 토론회

2006

성 인종 차별적인 국제결혼 광고에 대한 '선의의 파파라치' 캠페인 진행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2007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총각 국제결혼 비용지원사업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

2007 ~ 2009

한국인 불임 부부에 의해 대리모로 이용당한 베트남 결혼 이주여성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양육자변경청구소송 진행 및 일부 승소

2008

한국인 남성의 정신장애 사실을 은폐한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및 승소

2005 ~ 2012

국제결혼 중개구조 개선을 위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을 위한 활동



2005 국제결혼중개 시스템 현지조사 (상)

2006 국제결혼 광고에 대한 '선의의 파파라치' 기자회견 (하)

젠더폭력 :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에 반대합니다!

장애여성 성폭력의 경우, 존재하는 법의 언어는 장애여성의 피해를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상담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판례 분석 작업을 하였으며 여러 기관과 상담소의 장애인 성폭력 상담원 교육을 도맡았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는 노동자가 오히려 해고되는 초법적인 현실이 존재했습니다. 성희롱 피해에 대한 척박한 인식과 현실을 바꾸기 위해 법을 바꾸어야 했습니다.



2006

장애여성 성폭력 상담 가이드북 공동 제작

2008

군 내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변호인 활동

2008 ~

장애인 성폭력 상담원 법률교육

2010

장애인 성폭력 사건 쟁점 해결 프로젝트-장애여성 성폭력 판결 분석

2011

여성노동자의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2012 ~

직장 내 성희롱 실태 개선을 위한 법 개정 작업,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상담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2010 장애인 성폭력 사건 쟁점 토론회 (상)

2011 여성노동자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 및 대안연구 토론회 (하)

인신매매 : 성 착취와 폭력 없는 '안전' 한 이주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1960~70년대 미군 기지촌에서는 '양공주'라 손가락질받던 한국 여성들이 클럽 업주에 의해서 주한 미군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강요당했습니다. 2000년대엔 필리핀·러시아 여성들이 그 자리를 대체했습니다. 예술 흥행(E-6) 비자로 이주한 여성들은 한국에서 '가수'로 일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미군 기지촌의 클럽에 인계되어 원치 않는 성매매 강요에 노출되었습니다. 여권을 압수당했고, 언젠가 미등록이주인이 되어 강제퇴거당할 수 있었습니다. 취약한 법적 지위는 성매매 강요에 악용되었습니다. 조직적인 인신매매 범죄의 구조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 범죄에 대하여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은 인식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는 전무합니다. 현장 인권 단체와 함께 몇 년째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나 법 통과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6

예술흥행(E-6)비자를 통한 성산업으로의 이주여성 유입 실태조사

2010

성산업에 유입된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안내서 공동 제작
한국-필리핀 간 성산업 이주(E-6사증) 송출 실태조사

2010 ~

안전한 이주 보장을 위한 「인신매매 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활동



2010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안내서

장애인권

사회에서 배제된 장애인의 삶에 주목하다

공감은 처음 활동을 시작한 2004년부터 사회에서 배제된 장애인들의 삶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장애인들은 사회에서 배제되어 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지역사회에 있더라도 제도와 일상에서 제한당하고, 배제되어 왔으며, 비장애인과 분리되어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거부당해 왔습니다. 공감은 이러한 장애인 차별의 현실에 맞서 수많은 장애인인권단체들과 함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꾸준히 갈 것입니다

장애인 인권침해와 차별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장애인들도 당연한 사회구성원으로 서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제도 개선을 통해, 교육과 인식 개선을 통해 더디지만 꾸준히 가야 합니다. 공감은 앞으로도 그 길에 함께 할 것입니다.

장애인 차별에 맞서다

장애인들은 고용, 교육, 이동, 접근, 서비스, 사법 분야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장애 유형별로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당해 왔습니다. 이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지난 2007년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고, 2008년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공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활동부터, 법 시행 이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형사고발, 차별구제소송 등 다양한 법률 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2005

장애인차별금지법안 가이드북 제작, 서울시 상대 청계천 접근권 차별에 대한 구제소송

2006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민관기획단 활동, 보험사 상대 장애아동 여행자보험가입거부에 대한 구제소송, 시각장애인 역사추락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2009

청각장애인 교수 해임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소송

2010

보험사 상대 지적장애인 보험가입거부에 대한 구제소송, 복지부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연구

2011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외국사례 연구 수행

2012

시청각장애인 참정권 차별에 대한 구제소송,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침해에 대한 구제소송



2009 청각장애인 교수 해임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소송 (좌)
2012 시청각장애인 참정권 차별에 대한 구제소송 (우)

전국의 도가니에 맞서다

지난 2011년 하반기 전국을 휩쓸었던 도가니 신드롬은 장애인 시설에서 벌어진 끔찍한 성폭력과 인권침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문제는 도가니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그 전에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감은 이러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를 고발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에 꾸준히 함께해 왔습니다.

2004

지적장애인시설 교남소망의 집 복지시설 생활 장애인 인권보장내규 작업

2005 ~ 2012

전국의 인권침해 장애인시설 조사 및 고발, 진정 참여

2005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생활시설 생활자 인권보장 방안 연구 참여

2010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거부에 대한 취소소송

2011

도가니대책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활동 참여

2012

국가인권위원회 거주시설 장애인 자립생활 욕구 및 지원방안 연구 참여



2004 지적장애인시설 교남소망의집 주최 시설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좌)

2011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활동 (우)

정신장애인도 인권의 주체이다

우리 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의 지위는 장애인 중에서도 가장 열악합니다. 아무도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신장애인들은 과도하게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되어 있고, 지역사회에서도 정신 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도 인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권침해와 차별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2007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법제 개선방안 연구 참여

2007 ~ 2008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작업 참여

2008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인권개선을 위한 외국 사례연구 및 선진모델 구축 연구 참여

2009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집단따돌림 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활동

2010 ~ 2012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정신보건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대상 인권강사 양성과정 참여

2011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연구 참여

2009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집단따돌림 사건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상)

2012 발달장애인 인권침해사례 해결과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하)

이주 · 난민

인권 불모지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이들의 목소리를 듣다

공감이 창립되었던 2004년 초, 이주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부정되고 있었고, 미등록 이주민들은 최소한의 적법절차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난민신청자들은 합법적인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부실하고 불확실한 난민인정절차에 수년간 묶여있을 수밖에 없었고, 10년간 법무부에 의해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은 난민신청자는 14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상황이 출입국관리법령 몇 개의 조항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었지만 관심을 가진 법률가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수의 지원 단체가 존재했던 이주 영역에서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관련된 제도개선이 일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고, 단속·구금·강제퇴거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난민 영역의 경우에는 지원단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소규모 실태조사가 한번 이루어진 것 외에는 난민의 인권을 보장하긴 위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 정책과 현장 사이

이주민과 난민의 열악한 인권상황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지는 법률가가 거의 없던 시절, 공감은 국회, 법원, 현장을 오가며 관련 법제와 관행의 개선, 구체적인 사건 대리, 법률교육 등을 통해 이주민과 난민 인권 증진에 기여했습니다. 그동안 어느 정도 법제의 개선도 이루어졌고, 관련 단체들도 늘어났고, 특히 변협이나 지방변호사회에 관련 위원회가 생기는 등 관심이 있거나 실제 소송 대리 등을 하는 변호사들의 저변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이주민과 난민 인권의 보호보다는 관리와 통제 중심의 방향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외국인 혐오주의, 인종주의적인 경향이 확대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공감은 그동안 축적되어 온 전문성과 경험을 토대로 정책 방향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획소송 진행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이주민의, 난민의 인권이 한층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주민이 권리의 주체인 사람임을 선언하다

공감은 초기부터 전국의 다양한 이주민 지원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현장활동가, 학자, 실무자 등과 함께 이주정책개선모임을 구성하여 이주민 관련 정책, 법제, 소송 등에 관한 공동의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공감은 최초로 헌법적 고찰, 국제법/비교법 연구,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이주민의 체류, 단속, 구금, 강제 퇴거 등 출입국 과정에서의 모든 법적 문제점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에 걸친 ‘출입국관리법 전면개정안 입법발의’ 등을 통해 관련 단체들과 함께 법제개선운동을 주도하였고,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 노동3권 등과 관련 헌법소송과 공개변론을 주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감은 국내 최초로 이주민 인권과 관련한 법률매뉴얼을 출간하고 이주민과 관련 단체들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법률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감은 이주민의 문제가 사람의 문제, 인권의 문제임을 사회에 알리고 관련 실무자들의 저변을 확대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자문해보면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2004 ~

출입국관리법 전면개정 법률안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 및 발의 청원 등 법제개선운동

2005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인권상황 실태조사 참여

2006

위법한 출입국단속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2006 ~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활동가를 위한 법률매뉴얼 출판 및 법률교육

2007

산업연수생에 대한 부당한 근로조건/처우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2007 ~ 2011

고용허가제 사업장 이동의 자유 관련 헌법소송

2008 ~ 2011

이주노동자 노동3권 관련 헌법소송



2006 이주민 지원활동가를 위한 법률교육 (상)

2010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자유를 위한 헌법소송 (하)

돌아갈 수 없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난민들, 그들의 자리를 찾아가다

공감은 초기부터 유엔난민기구 한국사무소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였고, 2008년부터 현장활동가, 학자, 실무자 등과 함께 난민지원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난민 관련 법제 개선 및 실태조사 등의 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공감은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 공개청구사건에서 승소하였고, 변호사가 대리한 사건으로는 최초로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사건의 승소를 이끌었고, 버마 민주화 활동가, 중국 민주화 활동가 등의 최초 승소 사례를 만들어 내는 등 소송을 통하여 20여명의 난민신청자들이 난민지위를 부여받도록 하였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 입법까지 난민신청자의 지위, 난민인정절차상의 적법절차, 난민과 난민신청자의 처우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난민법 제정운동을 주도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법제 등의 변화가 난민 인권의 실질적인 보호로 귀결될 수 있게끔 관련 하위법령의 정비뿐만 아니라 정부 조직과 사회 내의 시스템이 합리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2007

난민법 제정안 마련 및 발의 청원 등 법제개선운동 & 난민법 제정

2006 ~ 2007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 공개청구소송

2005 ~ 2008

버마 민주화 활동가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소송

2006 ~ 2008

중국 민주화 활동가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소송

2008

국내 난민 인권 실태조사 참가



2005 버마 민주화 활동가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 (상)
2011 난민의 날, 난민법 제정을 위한 플래시몹 (하)

빈곤 · 복지

공감은 초기부터 복지로 논의되던 아동과 노인의 문제를 인권의 관점으로 풀어내기 위해 관련 단체들의 법률지원, 법률해설서 제작, 교육, 제도 개선의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한편 2008년 경 이후부터 최근까지는 반빈곤의 여러 과제들 중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인 주거권과 공공부조제도의 핵심인 기초생활수급권의 보장을 위한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감은 지금까지의 활동을 좀더 체계적으로 해나가면서,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반빈곤과 인권, 법의 문제를 붙들고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동인권 : 단 한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도 놓치지 않기 위하여

공감은 학대 아동, 가정위탁 아동, 이주아동, 학생 청소년의 취약한 인권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1년에는 입양특례법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여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한 아동에 대한 보호 체계는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못합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처방이 필요한데 관심 갖는 국회의원이 없습니다. 관심 갖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질 사람들을 모아 내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겠습니다.

2006

아동학대 사례 개입을 위한 법률매뉴얼 공동 제작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9

입양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 활동
이주아동의 교육권·건강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 활동

2010

학생인권이 쉽 쉬는 학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학생인권조례제정 활동

2011

입양특례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입양허가제 및 숙려제 도입
인권보장과 차별금지를 포함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시의회 통과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법률지원 - 친양자 및 친권상실 재판 지원 및 승소

2012 ~

미등록 이주아동의 출생등록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조사



2009 이주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활동 (좌)
2011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정 활동 (우)

주거권 : 집, '사는 것'에서 '인권'의 문제로

초창기 공감은, 주거로서 적절하지 않은 곳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과 홈리스의 인권옹호단체를 지원하는 변호사 파견사업을 하였습니다. 2008년 무렵부터는 다른 인권단체들과 연대하여 한국 사회의 개발사업과 주거권이라는 주제에 보다 활동의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주거권운동네트워크의 일원으로서 주택개발사업에 대응하는 주거권 안내서 발간,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할 NGO 반박보고서 중 주거권 부분 집필을 함께 하였습니다. 또한 개발구역 세입자들의 주거이전비 소송을 기획하여 소송상 구제를 피하기도 하였습니다. 2009년 용산참사 이후에는 주거권 침해의 가장 심각한 형태이며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본 강제퇴거를 법률로 금지하기 위하여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감은 홈리스, 주거권 단체들과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고, 보다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조사·기획소송·법제 개선에 힘을 계획합니다.



2007

비닐하우스촌 주민 법률상담 및 주소지찾기 소송(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

2008

홈리스 사망에 대한 경찰 책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노숙인쉼터 설치운영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

2008 ~ 2010

주택재개발·뉴타운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청구 공동소송

2010 ~ 2012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을 위한 활동

2011 ~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2007 비닐하우스촌 주민 법률상담 및 주소지찾기 소송 (상)

2010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을 위한 활동 (중)

2011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공동대책위원회 활동 (하)

기초생활수급권 : 가난한 사람의 생존을 위한 최후 보루를 지켜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에 대해 최종적인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하는 법입니다. 공감은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최후 보루인 기초생활수급권을 법으로 온전히 보장받도록 하기 위하여 2009년 이후부터 인권 단체들과 연대하여 수급가구 실태조사, 기획소송과 진정, 법제 개선활동을 하여 오고 있습니다. 공공부조제도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자리잡을 때까지, 기초생활수급권의 사각지대가 모두 없어질 때까지 계속 활동하겠습니다.

2009

기초생활보장 권리찾기행동의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실태조사

20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변경처분 취소소송

20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연대활동

2012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실무관행과 지침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2009 기초생활 수급 가구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 (좌)

2011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집단수급신청 기자회견 (우)

국제인권

국제인권, 그 새로운 길에 서서

공감이 설립되었을 때, 다른 여러 단위에서 소위 '국제인권' 활동을 일부 진행하고 있기는 했지만 체계적이거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일회성 사업 혹은 행사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공감은 국내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인권기준에 입각한 법제개선, 소송, 교육, 국내외 기관 및 구제절차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국제인권 영역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초국경 이슈, 특히 해외한국기업의 현지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와 관련하여 국제인권기준 및 그 기준에 입각한 구제절차의 활용을 하나의 특화된 내용으로 접근했습니다. 또한 공감은 아시아에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인권(변호사)단체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인권(변론)운동과 관련된 경험, 정보, 지식 등을 공유하고 공동의 활동을 확대·강화하는 사업을 그 주된 활동의 하나로 규정했습니다.

전문성, 포괄성, 그리고 시의성을 지향하며

하나의 인권문제에 국제법과 국내법이 모두 문제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초국경 이슈들의 범위와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온 공감의 국제인권 관련 연구 및 현장 활동은 좀 더 체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감은 앞으로 국내 인권 현안에 대한 국제인권적 접근의 종합 및 체계화, 아시아 국가의 인권 현안에 대한 국제인권적 접근의 종합 및 체계화, 국내 및 아시아 국가의 인권 현안에 대한 국제/비교/국내법적 연구조사와 인권운동의 결합의 새로운 모델 창출 등의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국내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인권기준의 주류화를 꾀하다

공감은 구성원들의 국제인권법 연구, 유엔인권기구 NGO보고서 공동 집필 및 현지 활동, 국내소송과 관련한 국제인권기준의 활용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꾸준히 국제인권기준 및 관련 권고의 국내 이행을 도모해 왔습니다. 2007년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에 대한 대응을 관련 단체들과 함께 준비하면서 관련 활동가, 연구자,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국제인권네트워크의 결성을 주도하였고, 2008년 촛불집회를 계기로 유엔인권메커니즘의 특별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비록 아직까지도 소수의 활동가와 실무자들만이 국제인권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과정은 이러한 부족한 자원을 최대한 집중하고 향후 양적 및 질적 발전가능성을 모색해 온 과정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2006 ~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위원회 등 유엔조약기구,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등 관련 NGO 보고서 공동 집필 및 현지활동 참가

2008 ~ 2009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비공식 초청 및 공식 국내방문 공동 기획 및 진행

2006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에 관한 연구조사 및 공청회 제안 및 진행

2007

서울경인이주노조 노조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소송 항소심 공동대리 및 국제법/비교법적 검토 준비서면 제출

2009 ~ 2010

영국법원 및 호주법원 탈북자 난민신청사건 전문가 의견 제출



2009 유엔 사회권 위원회 권고 이행촉구 기자회견 (좌)
2012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대한민국 심의 관련 NGO 대응 활동 (우)

해외한국기업의 현지 인권침해에 관한 지속적인 감시의 기틀을 다지다

공감은 그 설립 초기부터 국제민주연대 등 관련 단체와 함께 해외한국기업 감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해외 한국기업의 현지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관련 국내외 기준의 연구조사와 인도, 필리핀 등지에서의 현지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파악된 인권 침해 사례들에 대하여 OECD 다국적기업에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관심을 가진 단체들과 실무가들이 새롭게 결합하고 있고,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사례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2004 ~

버마 내 한국기업의 가스개발 프로젝트 관련 현지조사 및 미국 하버드로스쿨 국제인권클리닉과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공동 제출

2007 ~

필리핀 내 한국기업의 노조 탄압 관련 현지조사 및 OECD 다국적기업에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진정 국내단체들과 공동 제출

2008 ~

인도 내 한국기업의 제철소 프로젝트 관련 현지조사 및 OECD 다국적기업에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진정 국내외단체들과 공동 제출



2009 한국(공)기업의 해외에너지 개발과 NCP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책간담회

아시아 인권(변호사)운동의 선봉에 서다

공감은 여성, 장애인, 이주, 난민, 성소수자, 다국적기업, 사법접근권 등 공감의 활동영역과 관련한 아시아 지역 관련 단체 네트워킹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08년부터 2년 동안 진행된 한국, 일본, 필리핀 이주민 인권 변호사 네트워크 프로젝트입니다. 공감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3국의 관련 단체 및 변호사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공동의 과제를 도출하기도 했습니다. 공감은 아시아 내에서 가장 활발한 회원단체 중심의 활동을 펼치고 있는 아태난민권리네트워크의 공동 설립하여 2010년부터 2년간 의장 단체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아시아 내 유일한 인권변호사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 인권에 기초한 사법접근권 아시아 컨소시엄을 공동 설립하고 2011년부터 초대 의장 단체로서 정부기관, 법원, 경찰, 국가인권기구, NGO를 아우르는 민관협동네트워크의 활동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2008 ~ 2010

한국-일본-필리핀 3국의 이주민 인권 개선을 위한 아시아 변호사 네트워크 프로젝트 진행

2008 ~

아태난민권리네트워크 공동 설립 및 활동 참가 (2008년~) 및 의장 단체 활동 (2010년~2012년)

2010 ~

인권에 기초한 사법접근권 아시아 컨소시엄 공동 설립 및 활동 참가 (2010년~) 및 의장 단체 활동 (2011년~)



2008 아태난민권리네트워크 참가 (좌)
2010 일·한 외국인 법제연구회 참가 (우)



성소수자

공감은 2004년 창립 초기부터 그동안 한국사회와 변호사들이 외면하여 왔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04년 성소수자 인권단체 파견사업을 통하여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성적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법률 제정엔 실패하였지만 2006년 <성전환자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례법> 입법운동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성소수자 인권·제도부분은 척박한 황무지 같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소수자 인권단체들과 함께 기초 실태조사 및 연구, 연대활동, 인권교육 등 기초를 다지는 활동들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공감 내부에서 '공익 일반' 카테고리 분류했던 '성소수자' 활동부분을 독립적 분야로 지정하였습니다.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공감의 지향을 분명히 드러내고, 해당영역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함입니다. 공감은 내부 문화에서부터 이성애 중심주의에 대한 성찰과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비롯하여 성소수자와 관련한 법제 개선 및 공익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소수자 인권을 찾아서

성소수자들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합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성소수자들은 사회적 편견과 일상적 차별로 인하여 온전히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공감은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하여 성소수자 인권단체들과 함께, 성소수자 인권현황 기초 실태조사에서부터 법제도 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1년 법률가, 정책연구자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를 꾸려 앞으로 성소수자 인권 분야에서 더 적극적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4

2004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성적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 연구 참여

2007 ~ 2008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의 연구 및 <대안적 가족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집 : 담론/제도/사례연구> 발간 참여

2011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창립 및 <성소수자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연구 참여



2011 가족구성권 연구모임 참여

호모포비아 사회, 혐오와 차별에 맞서다

성소수자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활동은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사회에 만연한 동성애혐오(호모포비아)로 인하여 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에서 '성적지향'이 삭제당하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조항에서 '성적지향'이 삭제당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활동으로 본격화되었습니다. 2007년 <차별금지법>은 결국 현재까지 제정이 되지 않았지만, 2011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성소수자 인권단체 활동가 및 지지자들과 함께 서울시 의회 점거 농성을 포함한 적극적 입법 대응활동으로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을 살린 조례를 제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감은 동성애를 유해한 것으로 취급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영화 <친구사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분류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동성애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알 권리, 표현의 자유, 평등권 보장'이라는 유의미한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2007 ~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및 <반차별공동행동> 연대활동 참여

2010

영화<친구사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분류 취소소송 승소

2011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 및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이만스쿨팀> 활동 참여



2008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법안 공청회

이분법적 성별규범에 문제제기하다

2006년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을 인정한 결정 이후, 공감은 성소수자 인권단체들과 함께 <성전환자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례법> 입법운동을 하였으나, 결국 제정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대법원 성전환자 성별정정에 관한 예규 변경을 위한 기획신청을 준비하고 있고, 입법적 대응활동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감은 군대, 교도소, 난민 등 이분법적 성별규범의 공간에서 이중의 억압과 차별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성소수자들을 위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6

<성전환자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례법> 입법운동

2010 ~ 2011

트랜스젠더 재소자 처우에 대한 국가배상소송 및 <구금시설과 트랜스젠더 인권 토론회> 기획, 주최

2011

군형법 제92조 '계간' 처벌 조항 위헌제청사건 현재 공개변론
파키스탄 남성 동성애자 난민신청 지원

2012

대법원 성전환자 성별정정 예규 변경을 위한 기획신청



2011 헌법재판소 균형법 제92조 합헌결정 규탄 기자회견 (상)
2012 퀴어퍼레이드 참가 (하)

취약노동

소외된 노동자에 주목하다

노동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나 사람들도 많은데 왜 공감이 노동권에 관심을 가지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청소년노동자, 이주노동자, 가사노동자, 여성노동자, 중고령 노동자처럼 노동자 안에서도 소외 받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연령, 국적, 인종, 성별 등을 기준으로 한 이중의 차별이 소외된 노동자의 삶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회의 관심과 제도의 보장 밖에 있는 소외된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하여 공감이 나섰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은 의지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어느 분야도 법률가의 대응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겸손해지고 의지를 다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취약노동 분야에서 활동한 지 3년이 되어 갑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혼자 외롭게 싸워야 하는 노동자들을 찾아서 공감이 곁에서 힘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방식에 의한 결합

청소년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노동인권 교육과 감독 주체인 고용노동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중요합니다.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가사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법령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요양보호사나 간병인과 같은 돌봄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감은 소송과 상담 외에도 교육, 자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연구조사, 법제 개선 작업, 기고, 토론회 참여, 단체 지원과 연대를 통해 소외된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법률가가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0 고령화 사회의 돌봄노동에 대한 진단과 전망 토론회 (상)
2012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ILO 협약 비준 촉구 플래시몹 (하)

2010 ~

청소년 노동 감독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청구 및 정보공개
청구 소송

2011 ~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요양보호사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작업 및 운동, 가사노동 관련 각국의 입법례 연구조사
청소년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따뜻한
밥хан끼 캠페인단 활동

홍익대학교 청소년노동자 불법파견 진정

2012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 관계 법령 개정 작업
및 돌봄연대 활동

청소년 노동 관련 국회의원 간담회

서울대 에이즈 감염 간병인 지원 활동, 국정원 여성노동자
정년차별 무효확인 소송

서울대 청소년용역 입찰 관련 인권센터 자문

차별을 넘어 연대로

노동자는 사회적 약자가 아닙니다. 노동자는 소수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이에 따라 전체 노동자의 노동권이 위협 받는 현실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노동자의 지위는 불안정합니다. 이에 공감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그래서 소외된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가 연대하고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04 ~

LG전자 왕따 노동자 부당해고 무효확인소송

2010 ~

도시가스검침원 퇴직금청구소송
하나은행 비정규직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고용서비스선진화 대응 소책자 발간 참여
성북시각장애인 복지관 노동법 교육

2011 ~

택시기사 사납금 강요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부당해고관련소송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연구조사
고용서비스선진화 및 직업안정법 개정 대응 법률 교육

2012 ~

학교비정규직 조리사 고용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2010 도시가스검침원 퇴직금청구 소송 진행

공익법 일반

민주주의는 풀뿌리에서부터

공감은 창립초기부터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선심성 투자사업, 지방의원들의 관광성 외유, 지방의원들의 위법한 의정비 인상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인 예산낭비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수단으로 주민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9년에는 주민소송제도 도입 이래 최초의 주민 승소판결을 받아내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그동안의 주민소송의 지원활동의 성과를 모아 사례로 살펴보는 주민소송 가이드북 「주민소송 사용설명서」를 기획, 발간하여 주민소송이 주민자치의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2005

전남 6개 시군을 상대로 시의회,군의회 의원들의 해외출장내역 및 예산내역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2006

광명음식물쓰레기처리장 부설시공 책임자들에 대한 주민소송

성북구의회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등 예산낭용에 대한 주민소송

2007

청양군 '인공폭포 조성'으로 위법하게 지급된 예산 환수 주민소송

2008 ~

도봉구/금천구/양천구 위법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반환 주민소송

2009

사례로 살펴보는 주민소송 가이드북 「주민소송 사용설명서」 발간

2012 ~

서초구의 위법한 도로점용허가무효확인 등을 위한 주민소송



2008 도봉구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반환 주민소송 (상)
2009 사례로 살펴보는 주민소송 가이드북 「주민소송 사용설명서」 발간 (하)

에이즈, 사회적 차별과 낙인에 저항하다

HIV/AIDS 감염인들이 처한 인권침해 상황은 질병 자체에 기인한 것보다는 사회적 차별과 낙인에 따른 것이 많습니다. 공감은 2006년 감염인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내용으로 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을 감염인의 인권보장과 지원정책의 관점으로 개정하는 입법운동을 하였고, 다국적 제약회사의 에이즈치료제 공급 거부에 대해서 강제실시를 청구하는 등 한국사회의 HIV/AIDS 감염인이 처한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6

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운동

2007 ~ 2009

HIV양성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취소소송

2009

에이즈 치료를 위한 필수 공급약제 '푸제온' 공급중단 사태 해결을 위한 강제실시 청구

2011

유엔 '법과 HIV에 관한 국제 위원회'에 제출하는 한국인권단체 보고서 작성

HIV 감염인 재소자 격리수용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신입수용자에 대해 HIV검진 의무화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 반대 의견제출

2012

HIV 감염인에 대한 진료거부금지 및 비밀누설금지를 위반한 의료인 고소 대리



2009 에이즈 치료 약제 '푸제온' 강제 실시를 위한 활동

공익을 위하여

공감은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을 통해 공익제보자를 지원하여 수사법률상담, 민·형사소송지원을 진행하였고, 군의문사 사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사건,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사건을 지원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유의미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2008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참여 및 공익제보자를 위한 국가배상청구소송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한 위헌 제청 민 헌재 공개 변론

2011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위헌에 관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2012

군대 내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결정 취소소송

공익법 교육 · 중개

공감에 공감하기

공감은 현재 변호사 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전업적 공익변호사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수요에 비해 턱없이 공급이 부족합니다. 법률 사각지대를 메꾸기 위해 공익적 법률가를 양성하여야 하고 기존 법률가들의 공익활동도 보다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공감은 초기부터 이러한 공익법 교육중개를 통한 공익법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공감은 다리를 놓는 작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공익법 교육중개사업은 예비법조인들을 공익인권 분야로 이끄는, 기존 법조인들을 공익인권 단체로 이끄는, 그리하여 이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작업입니다. 다리를 놓고 서로를 연결하여 법조인들이 공익인권분야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체의 공익인권법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감은 앞으로도 이러한 다리 놓는 작업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공익인권교육이 중요하다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소외되는 사람없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인식 개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인식 개선을 위해 공익인권에 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공감은 공익인권교육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2005 ~ 2012

공감 대학생 인턴십 제도 운영(정기/수시/특별인턴, 2013년 1월 현재까지 16기 정기인턴 활동)

2005 ~ 2012

공감 월례포럼 진행

2008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공동으로 국제 심포지엄 '로스쿨과 공익인권법' 개최



2008 ~ 2012

예비법조인 및 대학생 대상 공감 인권법 캠프 개최

2010 ~ 2012

전국 로스쿨 '소수자 인권 실무', '리걸클리닉' 강좌 및 각종 특강 진행



공감 월례포럼 (상)

2008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공동으로 국제 심포지엄 '로스쿨과 공익인권법 : 전망과 모색' 개최 (중)
예비법조인 및 대학생 대상 공감 인권법 캠프 개최 (하)

변호사 공익활동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여야 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공익법 활동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하고, 공익법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2005

서울대 법의 지배센터 'NGO와 법의 지배' 프로젝트 공동수행

2007

법무법인 총정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협약 중개
1차 미국 공익법단체 탐방

2010 ~ 2012

로펌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익담당 변호사 간담회 진행(총 4회)

2010

2차 미국 공익법단체 탐방

2011 ~ 2012

공익변호사 양성을 위한 공익변호사 라운드테이블 진행

2012

희망법 주최 공익법 실무학교 강의 및 간담회 참여
변호사협회 60주년 기념 심포지엄 '변호사 공익활동의 성과와 개선방향' 발제
변협 변호사 공익활동 지표 개발 연구 참여



2010 로펌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변호사 간담회 (좌)
2010 2차 미국 공익법단체 탐방 (우)



기획기사 PART 3
 공익변호사를
 찾아서



공익변호사를 찾아서

공익 · 인권과 변호사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이러한 변호사법상의 변호사의 사명에 관하여 법조인들과 일반 시민들 간에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변호사의 직무 자체가 공익 대변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변호사의 일상적인 직무수행의 과정에서 다른 말로 하면, 의뢰인의 법적 이익을 대변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변론주의라는 관점에서 ‘양’ 당사자의 법적 이익이 변호사에 의해 대변됨으로서 공익이 실현된다는 것이라는 인식이 법조인들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그러나 변호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그 지위는 형편없이 저하되고 말았다. ‘변호사를 산다’는 말이 이제는 국민 일반의 관용어가 되다시피 하였으니 대중의 눈으로 볼 때에 변호사란 다른 기능공과 마찬가지로 한낱 법원이나 검찰 사이의 통로에 밝은 사건 주선 기술인으로 여겨지고 노임만 지급하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존재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변호사 직무 자체가 곧 공익이라는 주장에 국민들은 더이상 공감하지 않고 있다.

검사 출신 법학자 김두식은 <헌법의 풍경>에서 “법조계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쓸데없이 튀지 말라’는 것”이라고 했다. 남들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시민단체에서 귀코리만한 보수를 받으며 일하는 변호사들도 법조계 내부에서 보면 그저 ‘튀려는 사람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말한 ‘튀지 않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일까. 전태일이 “대학생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목숨을 끊은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법의 테두리’에서 밀려난 사람이 존재한다. 오히려 그때의 전태일은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장애인 등 더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 주변을 맴돌 뿐이다. 한 사회에 필요한 법률서비스의 전체량은 그 사회에 속한 전체 법률가가 담당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법률가의 의무이다. 따라서 공익활동 활성화는 법조인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이자 시대의 요구라고 할 수 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이가 ‘공익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라운드테이블’을 마련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공익변호사의 길에 먼저 들어선 선배들이 “관심은 있지만, 선뜻 나서지 못하는” 후배들을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지난 9월 25일과 11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열린 테이블에는 공감뿐 아니라 동천, 어필, 희망법, 퍼블릭사무소 등 다양한 공익법단체와 로스쿨 학생, 예비 법조인들이 참석해 빼곡히 자리를 메웠다. 이곳에서는 밀려난 사람을 대변하지 않는 사람이 ‘튀는 사람’일 뿐이었다. 결국,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관점’은 달라지는 법이다.

“난민들의 ‘드라마틱한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바꿔 주고 싶습니다.”

김종철 변호사는 스스로를 ‘겉쟁이’ 이라고 불렀다. 사법연수원 시절 ‘피난처’ 라는 NGO 단체에서 자원 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누구보다 드라마틱한 인생을 사는 난민들은 그를 변하게 했다. 그는 난민들을 만나고서 “이들의 이야기를 해피엔딩으로 바꾸겠다”고 결심했다. 공익법센터 ‘어필’ 을 만들겠다고 제안서를 쓴 것도 그때였다.

그러나 열정을 현실로 옮겨내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는 법무법인 ‘소명’ 에 찾아가 “난민 전담으로 일할 테니 공익 변호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했다. 그 과정에서 두 명의 변호사가 ‘시드머니(Seed money)’ 를 기부했다. 그렇게 모인 종잣돈과 쌓인 경험들은 든든한 밑거름이 됐다. 2011년 1월, 마침내 어필은 문을 열었다. 정신영 미국변호사와 어진이 호주변호사도 어필의 ‘동지’ 가 됐다.



아직 문을 연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어필의 활동은 눈여겨볼 만하다. 올해 초 인권침해로 논란이 됐던 ‘오양 75호’ 사건에서 외국인 선원의 변호를 맡아 활약했고, 지난해 작성한 ‘이주아동 구급에 관한 NGO 리포트’ 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반영되기도 했다. 지난해 10건 가까운 사건을 처리할 정도로 ‘난민 분야’ 에도 관심이 많다.

하지만 더 눈길이 가는 건 결과보다 이들이 추구하는 가치다. “삶은 감동이 있어야 하고, 일은 재밌어야 한다”는 모토 아래, 세운 규칙은 웃음마저 짓게 한다. 일명 ‘메뚜기 법칙’, ‘트랜스포머’ 가 바로 그것이다. 상근변호사는 물론 인턴들도 정해진 자리 없이 상황에 따라 ‘메뚜기’ 처럼 자리를 옮기고, 회의할 때는 책상을 재빨리 ‘회의 모드’ 로 변경한다. 좁은 사무실에 짜증을 낼 법도 하지만, 오히려 이런 분위기는 이들을 끈끈하게 만든다.

그 때문인지 어필의 열정에 ‘응답’ 하는 사람들도 갈수록 늘어간다. 10명으로 시작한 후원자는 현재 260여 명의 개인 후원자와 10여 개의 단체 후원자로 늘었다. 난민 의뢰인을 위해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정신과 전문의도 있고, 자원 활동가들도 생겼다. 그럼에도 밀려난 삶을 해피엔딩으로 바꾸고자 하는 이들의 노력은 여전히 ‘현재진행중’ 이다.

동천

자본주의 4.0에 '동천'이 답하다

'자본주의 4.0'이라는 키워드가 화두다. 여기에는 로펌도 예외가 될 수 없지만, 공익을 전담하는 변호사 수는 아직 손으로 꼽힐 정도다. 2009년 6월, 법무법인 태평양이 로펌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공익재단법인 '동천'을 설립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돕고 싶지만, 방법을 모른다"던 동료들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당시 공감 외에는 공익변호사 단체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척박한 환경에서 이는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고 말하는 양동수 변호사의 한숨에는 그간의 고충이 배어 있다. 그때부터 동천은 로펌 변호사의 프로보노 활동을 활성화하고, 공익활동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토대를 다져 나갔다.



설립 첫째, 법률 자문이 필요한 사람들과 로펌 변호사를 연결해 소송을 도왔다. 그 과정에서 "변호사들이 고압적이다"는 난민과 "이들이 협조를 잘 안 한다"는 변호사 사이에 오해도 있었지만, 이런 시행착오 덕에 동천은 더 탄탄한 '공익법률지원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다. 또 예비 법조인을 위한 공익법률지원 교육과 로스쿨 학생들이 지역주민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는 '리걸 클리닉'은 동천의 또 다른 자부심이기도 하다.

게다가 '동천'은 태평양이라는 지원군 덕분에 재정도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편이다. 전체 자금의 3분의 2는 태평양으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나머지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낸 기금이다. 개인기부자들도 꾸준히 늘고 있다. 동천의 식구도 국내 변호사 3명과 뉴질랜드 변호사를 포함해 8명으로 늘었다.

지난 3년간 '공익'만을 바라보고 온 동천의 목표는 뚜렷하다. 양 변호사는 "미국의 유명 비영리단체 '프로보노 인스티튜트(Pro bono institute)' 처럼, 변호사들의 공익활동 계획 수립과 전문변호사 양성 등 변호사 공익활동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법이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희망법에는 ‘사람 사는 냄새’가 난다. 얼핏 보면 일반 가정집 이랑 다를 게 없어 보인다. 구성원들은 함께 밥을 지어 먹기도 한다. 그러나 이곳은 엄연한 변호사 사무실이다. 대신 그 앞에 ‘공익’이라는 두 글자만 더 붙었다. 16평 남짓한 공간은 7명의 구성원이 생활하기엔 비좁을 수 있지만, 열정만큼은 어느 로펌도 부럽지 않다.



희망법의 탄생은 2011년 6월로 거슬러간다. 민변 소수자인권 위원회 모임에서 만난 구성원들은 전업 공익변호사의 길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번개모임’이라고 불렀다. 자료 조사를 하고, 아이디어를 모아가다 보니 어느 정도 열개가 그려졌다. 이 무렵 국내 첫 시각장애인 변호사로 알려진 김재왕 씨도 희망법에 합류했다.



이들은 “법이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뛰었다. 첫 사건으로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무효소송에서 서울시의회 변호를 맡았고, 지난 7월에는 김진숙 지도위원을 응원하기 위해 ‘희망버스’에 올랐다 구속된 참가자들을 위해 변론에 나서기도 했다. 장애인법연구회 활동에도 적극 나섰다. ‘희망법’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순간들이었다.

하지만 ‘재정’은 늘 이들의 발목을 잡는다. 현재 사법연수원 41기가 조성한 ‘공익펀드’와 서울대 로스쿨 동료들이 모은 ‘김재왕기금’은 든든한 후원금이지만,

계속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두 펀드의 후원 기간은 각각 3년과 2년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은 어기지 않는다.

벌써 설립 1년. ‘숫자’로 표현된 사건들은 적어 보일지 모르지만, 이들의 말처럼 활동 연혁을 한 줄 더 만들어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응축돼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결과에 연연하기보다 그 이야기들을 대신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달릴 뿐이다.

퍼블릭
법률사무소

돈이 있어야 '공익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한때 나도 그랬다”

누구나 꿈꾼다고 '공익변호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기존 단체들이 대부분 재정을 고민하기 때문에 선뜻 신규변호사 채용에 나서지 못한다. 그래서 직접 '법률사무실'을 차리기로 한 청년이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배의철 변호사다. “1년 동안 전쟁 같은 시간을 보냈다”는 그의 표정은 사뭇 비장하기까지 하다.

처음에는 '환상'이 있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생활이 파괴되지 않을 정도로 받겠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이런 생각만으로 돈이 갑자기 생겨나는 건 아니었다. 사법연수원 41기 동료들을 찾아간 것도 그때였다. “커피 한잔 마시지 않고, 나를 도와주는 게 어떨겠냐”고 물었다. 누군가는 웃음을 터트렸고, 그는 상처를 입었다. 출발부터 쉽지 않았다.

그러나 노력은 그를 완전히 배신하진 않았다. 동료들의 도움으로 공익펀드기금이 조성됐다. 41기 연수생 내 기독교 모임인 '신우회'와 인권법학회 회원들의 도움이 컸다. 그도 '수혜자'가 됐다. 그는 현재 이 기금으로부터 290만 원을 후원받는다. 개인 후원자들과 구조기금 수입으로도 200여만 원을 더 받는다. 월급은 수습변호사와 합쳐 3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고스란히 나간다.

'전쟁 같은 시간'이라고 말할 만큼 일도 열심히 했다. 저축은행 후순위권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위해 나섰고, 골드만삭스 주식위런트증권(ELW) 호가조작 소송도 맡았다. 난민 영역에서 그가 맡은 소송만 해도 21건에 달한다.

그는 공익법 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운 현실에 관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현재 모든 법률사무소는 영리목적으로만 등록이 가능해 비영리 법인이나 법정기부금 단체에 주어지는 30~50%의 세액공제 혜택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배 변호사는 “공익변호사 단체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변호사법에 비영리공익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획기사 PART 4

공감이 만나고 싶은 사람

‘용산참사’ 다큐

〈두 개의 문〉

김일란 감독과의 만남



Q&A



공감 9주년 창립 기념 자료집을 내면서 만나보고 싶은 인물에 〈두 개의 문〉 김일란 감독이 선정되었습니다. 김일란 감독은 ‘용산참사’ 다큐멘터리 〈두 개의 문〉 감독이자 ‘연분홍치마’ 활동가로 최근에는 〈뉴스타파〉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10일, 국제엠네스티 언론상을 수상한 김일란 감독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정리 : 장서연 (공감 변호사)

녹취록 정리 : 임수진 (공감 자원활동가)

QUESTION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단체 ‘연분홍치마’를 소개해 주세요.

ANSWER

‘연분홍치마’는 다섯 명의 활동가들이 새로운 문화운동을 통해서 사회운동을 해보려고 모였어요. 문화운동을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도에 대한 비판이나 운동도 중요하지만, 제도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어떤 감수성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제도는 불완전하다는 생각 때문이었고, 그래서 문화운동 차원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영상을 만들기 시작한거죠. 그로부터 8년이 넘었고, 조만간 10년이 되는데, 그러다보니 사람들이 ‘연분홍치마’를 영상단체로 많이 알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전문가 그룹은 아니었었고, 다큐를 한 편씩 만들면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러면서 각자 역량을 키우는 방식으로 활동을 해왔던 것 같아요.

QUESTION

‘연분홍치마’는 영상활동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나 가족구성권연구모임과 같이 연구조사 및 연대활동에도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분홍치마’가 그동안 했던 작업들을 보면, <마마상>(2005)은 기지촌 여성 성매매 실태조사를 하다가 만들어졌고, <3XFTM>(2008)은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하면서, <레즈비언 정치도전기>(2009)는 최현숙씨 선거운동 같이 하면서, 게이 커밍아웃 다큐멘터리 <종로의 기적>(2010)도 그렇고, <두개의 문>도 용산참사 ‘레이’ 활동에 결합하면서 제작되었습니다. 연분홍치마의 다큐작업은 관련 활동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와 깊은 이해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다른 영화들과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사안에 대한 활동과 영상 작업 사이에 균형을 유지 하는데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ANSWER

커밍아웃 3부작. <3XFTM>, <레즈비언 정치도전기>, <종로의 기적>을 만들면서 우리의 위치라는 것이 ‘당사자,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밖으로 내보낸다, 밖으로 출력한다’라는 느낌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종로의 기적>에서는 ‘게이나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자긍심’을 드러내고, ‘비성소수자들에게 게이들의 삶을 알린다’라는 두 가지 목표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가야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원하는 것과 그 바깥에서, 그 삶을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대중적으로 뭔가 변화를 이끌어가고 싶다는 사이에는 온도차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을 하면서 생각이 약간 변했어요. 대중 캠페인을 나갈 때 우리가 내부적으로 회의할 때 했던 이야기들이 대중 캠페인의 언어로 잘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상당히 합의 수준이 높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차별과 한국사회나, 대중들이 생각하는 차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느꼈어요. 특히나 차별금지법은 일반법이고 포괄법이었잖아요. 그것들을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당신 삶에서 너무 필요한 일입니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다큐멘터리의 역할은 대중캠페인 같은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거리를 걷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지나가다 이야기를 듣더라도 ‘어, 그 이야기가 맞네요. 필요한 것 같아요’라고 쉽게 설득할 수 있게 하는 이야기들, 그것을 하는 것이 다큐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고민을 하던 참에, <두 개의 문>을 제작하게 되었는데, 이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대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나와 모든 부분에서 동지적 관계는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이 사안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한명이라도 더 만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영화 <두 개의 문> 제작하기 전에 용산참사 현장으로 파견 나가 '레아' 미디어활동을 했잖아요. 용산참사 남일당 현장에서 어떤 활동들을 했었나요.



그때 <두 개의 문>을 공동 연출한 홍지유 활동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촛불방송 레아를 하고 있었어요. 2006년에 대추리에서 황새울 방송국을 했던 친구들도 있었고, 촛불방송국이라 해서 2008년 촛불 정국에서 1인 미디어 활동을 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다양한 정체성과 경험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레아를 만들었어요. 레아의 주요 활동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가지 이야기를 바깥에 알리는 그런 작업들을 했던 것 같아요. 재밌는게, 이 카메라의 역할이란 건 때때로 찍는 역할 이상을 할 때도 있어요. 그것은, ‘현장을 지키다’ 어떤 폭력적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거기 카메라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있고 싸우는 사람들에게 ‘지켜주고 있다’라는 면에서 조금 위안이 되기도 해요.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 같아요.

QUESTION

ANSWER

QUESTION

다른 인터뷰를 한 것에서 보니까 <두 개의 문>은 용산 철거민 재판을 방청하는 과정에서 영화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특히, 경찰특공대의 증언을 듣고, 검사가 ‘용산참사가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경찰특공대가 ‘농성자 책임이다’ 라고 답변했는데, 답변하기 전 경찰특공대의 짧은 ‘침묵’, ‘망설임’에 주목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과연 한국 법정에서 판사, 검사가 그런 미묘한 감정, 분위기, 맥락을 이해하고 고려할 수 있는 구조인가 회의가 들더라고요. 왜냐면 결과적으로 남은 기록은 그가 한 진술내용만 남잖아요. 일반 관객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영화에서 어떻게 살리려고 했는지 궁금해요.

ANSWER

그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지점인 것 같아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의도’를 들어야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뼈딱하더라도 그 사람의 의도는 그것과 다를 수 있고, 맥락을 지우고 말만 들으면 그 사람의 말을 온전히 듣는 것이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흔히 연인관계나 부부관계에서도 종종 싸우게 되는 에피소드들을 보면 말만 들어서 싸우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의도나 감정을 들었을 때 소통이 더 잘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훈련을 받아왔던 대화방식이 재판을 방청할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경찰특공대가 나와서 진술을 할 때 내가 느꼈던 건 한국사회에서 경찰특공대원들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을 경험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을 것 같고, 법정이라는 건, 아무리 경찰특공대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부담스런 공간일 수밖에 없잖아요. 판사, 검사, 변호사가 있을 때 일개 경찰은 오히려 변호사 앞에서도, 검사 앞에서도 위축이 되기 마련인 것 같아요. 나는 경찰들이 분명히 철거민들에게 악의적인 진술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재판에서 ‘화염병을 못 봤다’고 애길 하거나, 검사가 ‘김남훈 경찰의 죽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농성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는데, 스스로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여지가 있는 것 같은 답변을 하는 거예요. 순간의 고민이 느껴지는. 그것은 그 사람이 확고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뭔가 균열이 났다는 거죠. 그 균열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경찰들도 ‘뭔가 이상한데?’라는 생각을 했다면 그것은 분명 더 집중적으로 논의되어야 하죠. ‘왜 당신은 그렇게 확신하지 않냐’라고 질문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재판과정에서 들었어요. 또 적어도 ‘화염병을 못 봤다’라는 경찰들의 진술이나 ‘화재원인이 무엇인지 모른다’ 혹은 ‘다른 화재원인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증거들은 판사가 채택해야 할 증거임에도 하지 않은 것은 권력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 개의 문>이 국민참여재판의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만약 용산이 국민참여재판이었다면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다큐가 그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재판이라는 공간에 관객을 끌어들여서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판사와 똑같은 판결을 내리겠느냐’, ‘뭘 듣고, 들은 것을 토대로 해서 어떤 판단을 하는지’ 질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두 개의 문>은 개봉 방식도 독특했던 것 같아요. 배급위원회도 그렇고, 개봉 이후에 단체관람이나, 대관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졌지요. 개봉 과정과 그 이후에 대해서도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봉을 결정하는 것은 모험이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꼭 개봉을 선택하지 않아도 됐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지금 현재 개봉이라고 하는 배급구조에 따르는 언론공론화의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독립영화라는게 현재 배급구조에서는 별로 기대를 하기가 어려운데 그걸 배급위원들을 모집해서 극장 배급에 필요한 재정을 모으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834명이라는 배급위원들이 모였고, 그들이 개봉 첫 주의 관객이 되어줬던 것 같아요. 첫 주의 관객이 되어준다는 의미는 이 영화가 로켓을 발사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 1단계를 엄청 띄워야 그 가속도로 가는 게 있잖아요. 첫 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가속도를 만들기 위한.. 근데 첫 주에 우리가 정말 예상치도 못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첫 주의 만명의 관객이 들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고, 그러면서 관객들의 힘으로 극장이 열렸고, 개봉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16개의 극장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16개 극장에 27회차 상영에 하루 관객 수가 천명이 넘는 거예요. 그럼 대충 따져 보면 영화가 한 회차 상영할 때 몇 명이 들었겠어요. 많이 들은거지.(웃음) 관객 점유율이 굉장히 높았던 거예요. 50퍼센트 이상이 됐던거지. 그러면서 관객들이 영화를 못보는 사태가 발생하고.. 특정한 시간대에 영화를 못봐. 그 영화를 못 보는 사람들이, 그게 너무나 희한한 감정인데, 기쁘게 받아들이는거지. 영화를 못봐서 짜증나, 이게 아니라 매진됐어? 하며 기쁘게 받아들이는 상황?



QUESTION

ANSWER

QUESTION

감독으로서 GV(감독과의 대화)는 도대체 얼마나 다녔어요?

ANSWER

몰라요. 인터뷰도 몰라(웃음) 얼마나 했는지 몰라. 두 개의 문 블로그 보니까 기사 실린 것도 진짜 많은데, 일주일만에 만, 이주일만에 이만, 계속 삼만 사만 이렇게 계속 들이닥치니까 두달 넘어서는 한 7만? 지금 한 7만 3천 넘었을 거예요, 지금도 계속 한 판에서 드문드문, 아직 개봉을 접은 건 아니니까, 최종 스코어는 조금 더 나올 것 같아요.

QUESTION

연분홍치마는 공감과도 여러 연대활동을 같이 하고 있지요. 마지막으로 공감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NSWER

공감은 법과 관련한 투쟁할 때 언제나 가까이 있는, 좋은 파트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필요로 하고 같이 싸워야 하는 이슈들이 있을 때, 그 이슈들을 함께 하는데 정말 좋은 파트너예요. 공감 변호사들과 함께 현장에 갔을 때 정말 든든한 것도 있어요. (웃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실제로 거기서 변호사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들이 정말 든든하니까. 그래서 언제나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현장을 지키는, 카메라가 있듯이, 현장을 지키는 법조인들이 많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재판을 들여다보면서 느낀 것은, 법으로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과 행정을 바꾸는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법철학이랄까 (웃음) 마치 연분홍치마가 활동을 할 때 제도투쟁이나 법 투쟁과 더불어서 사람들의 감정이나 의식변화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처럼, 법 감정이라고 하는 것과 법이 실제로 집행되는 것이 거리가 있다고 느꼈어요. “법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와 같은 캠페인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법을 불신하면서도 막판에 가서는 법에 호소하고 법을 찾잖아요. 그런데 법에 배신당해요. 그리고 또 법을 찾아요. 아마도 한국 사회가 어느 정도는 안정되고 제도화됐기 때문에, 갈등이든 협상이든 뭔가 문제를 해결할 때 마련된 제도를 통해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고, 마치 모든 것이 법으로 해결될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법이 우리 삶에 깊숙히 들어와 있잖아요. 사람들이 법의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어떻게 활용 할지에 대한 캠페인이 필요한 것 같고, 공감이가 그런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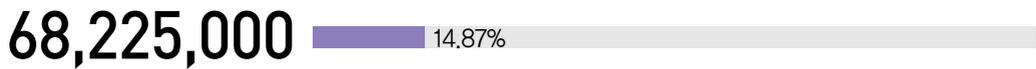
2012 한눈에 보는 공감 살림 · 모금 통계



개인 기부



로펌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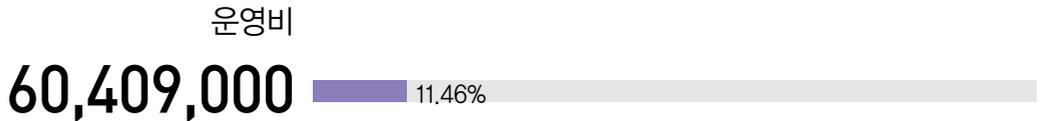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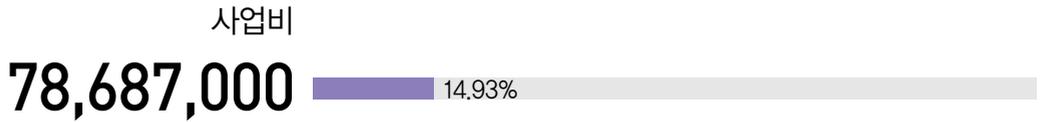


기업 및 단체



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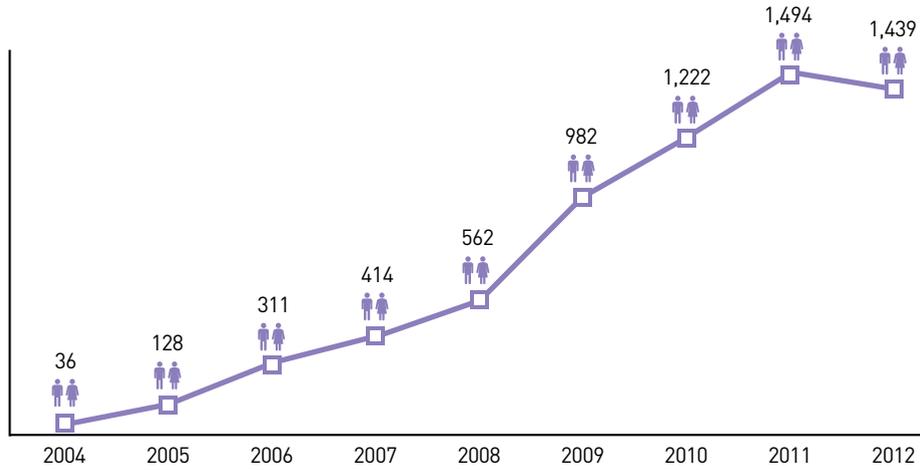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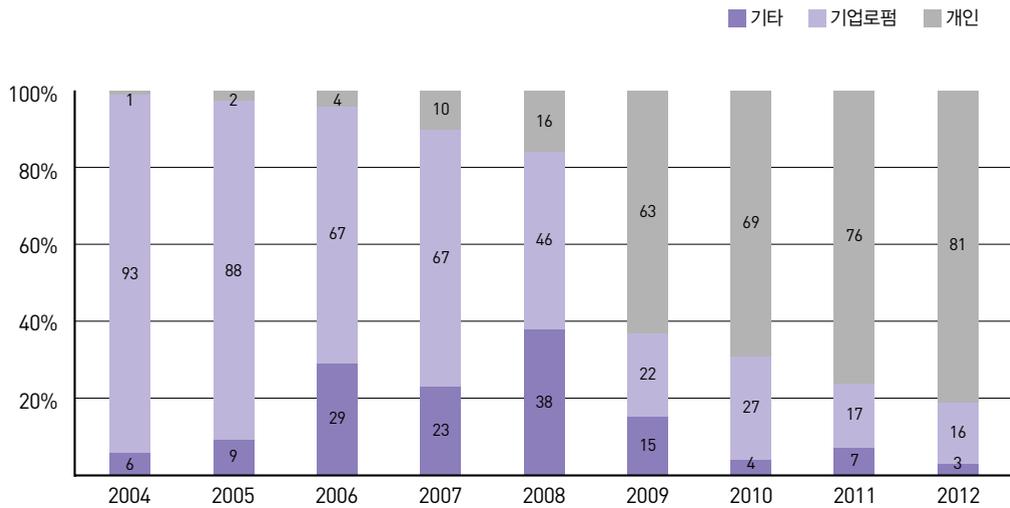
사업비	
교육 · 중개	7,735,000
연대단체 지원	760,000
법률교육	137,000
소송 지원	4,886,000
인권법캠프	20,742,000
월례포럼	1,776,000
연구조사	11,624,000
기부자 지원	25,094,000
홍보	4,021,000
행사비	1,912,000
소계	78,687,000

운영비	
복리후생비	9,869,000
세금과공과	13,676,000
지급수수료	9,024,000
건물관리비	6,710,000
지급임차료	4,105,000
사무실유지비	17,025,000
소계	60,409,000

연도별 정기기부자 수



연도별 유형별 모금분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희망을 전해 주세요.

2013년은 공감이
아름다운재단의 울타리를 벗어나
새로운 법인으로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첫 해입니다.

공감의 활동은 지난 9년과 다르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우리 이웃들의 삶의 현장에서
잃어버린 희망을 찾고 응원할 것입니다.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조금 느리더라도 씩 없이 걸어갈 것입니다.

그 걸음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원 신청

- * 홈페이지 : www.kpil.org (CMS, 신용카드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이메일 : gonggam@gmail.com
- * 계좌번호 : 하나은행 162-910015-36804 (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공감에 보내주시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연말정산시 비용 인정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기부금 영수증은 1년 동안의 기부액을 합산하여 이듬해 1월 초에 우편 발송되며, 별도 발행도 가능합니다.
- ★ 기부회원님께는 공감이 발행하는 연간보고서와 온라인 뉴스레터를 보내 드립니다.

원서동에 놀러 오세요!

부촌한옥마을

계동표차

재동 초등학교

러비니스케익

커피어공도리

큐슈엔'

충주버브밥

동네커피

MU'S Table

커피어마고

원정

해상금

맛다오리구이

부촌문화센터

김명자글국밥

재동순두부

침맛

이코데

안국역

Double Cup Coffee

리본커피

체밥

안동칼국수

청덕궁길 29-6
공익인민협합재단 공감
사우실

공원식품

원서공원

한서계동사옥

한옥밀집지역
Hanok Cluster Area

창덕궁

문화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창립 기념 자료집

발행일 2013년 1월

발행인 안경환

발행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서울시 종로구 창덕궁길 29-6 (원서동, 북촌창우극장 3층)

TEL 02-3675-7740 FAX 02-3675-7742

www.kpil.org

편 집 안주영

디자인 동방기획 (02-2277-0365)





주소 110-280 서울시 종로구 창덕궁길 29-6 (원서동, 북촌창우극장 3층)

전화 02. 3675. 7740 팩스 02. 3675. 7742

이메일 gonggam@gmail.com

홈페이지 www.kpil.org

